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CONTENTS

들어가며	03
------	----

I RCEP협정 주요내용

1. RCEP협정 개관	06
2. RCEP협정 체결현황	09
3.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3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9

II RCEP협정 활용절차

1. RCEP협정 수출활용 프로세스	24
2. 수출물품 HS Code 확인	25
3. 관세혜택 확인	29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32
5. 원산지 판정	38
6. 원산지증명서 발급	42
7. 원산지서류 보관 및 검증	43
8. 인증수출자 활용	45

III RCEP협정 활용전략

1. 우선순위 협정활용 전략	51
2. 인증수출자 취득 및 누적기준 활용 전략	59
3. 對일본 수출 활용전략	65

IV 별첨

RCEP협정과 기존 FTA 협정의 협정세율 비교	69
----------------------------	----

들어가며

‘Ⅰ. RCEP협정 주요내용’에서는 RCEP협정의 의미와, 체결과정, 체결효과, 무역원활화 규정,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규정 등에 관하여 정리함. RCEP협정은 한국,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국이 참여하여 무역규모, 역내총생산(GDP), 인구 측면에서 전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GDP 증가 및 194.56억불의 후생 증대 효과가 예상됨. 일본과의 최초의 FTA 체결로 우리나라 수출유망 품목 중 소주, 막걸리, 양조식초 등의 품목에 좋은 수출성장 기회가 될 것임.

RCEP협정은 「WTO 무역원활화 협정」을 상회하는 통관절차와 무역원활화를 규정하고 있음. RCEP협정을 통해 수입국의 사전심사결정(서) 90일 내에 발급 및 최소 3년간 유효, 수입국에서 48시간 내에 신속통관, 신선농산물과 같은 부패성 상품의 경우 6시간 내에 통관 및 반출 가능, 항공 특송화물의 경우 6시간 내에 통관 및 반출 가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WTO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기초로 더욱 강화된 SPS 운영 협력을 통해 국가별로 복잡하고 상이한 검역요건과 이로 인한 비효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Ⅱ. RCEP협정 활용절차’에서는 RCEP협정을 수출에 활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함. RCEP협정 활용을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수출농식품이 한국산임을 수입 상대국 또는 수입자에 입증하여야 함. 즉, FTA 원산지증명서가 수출물품 HS CODE 확인→관세 혜택 확인→원산지결정기준 확인→원산지 판정단계를 거쳐 정확하게 발급되어야 하고, 발급과정에서 확인·작성된 원산지 증빙자료는 5년간 보관되어야 함. 특히, RCEP협정의 이행과정에서는 관세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자율증명(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증수출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Ⅲ. RCEP협정 활용전략’에서는 실무예시를 바탕으로 RCEP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중국, 베트남 등 복수의 협정이 발효될 국가의 경우 특혜세율이 보다 낮거나 원산지기준의 충족이 용이한 RCEP협정을 선택해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특혜세율을 보다 낮게 적용 받을 수 있는 예시로 캄보디아로 수출되는 고춧가루, 말레이시아로 수출되는 유자차 등을 제시함. 또한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참기름 등 원산지기준을 충족할 수 없거나, 충족이 어려워 기존 FTA를 활용할 수 없었던 제품이 RCEP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FTA 활용이 가능하게 되는 예시를 제시함. 그 외에 RCEP협정의 회원국 생산 원재료를 사용해 한국에서 제조 후 수출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원산지 기준 충족이 가능해지는 예시로 고추장, 동물성사료, 만두 등을 제시함. 일본 수출제품의 경우 식초, 막걸리를 예시로 제시하고 유망품목에 대한 관세양허 정보를 정리함.

‘Ⅳ. 별첨’에서 RCEP협정 회원국 중 13개국(싱가포르 제외)의 양허표를 분석하여 수입국 기준 對한국 수입실적 상위 30개 품목에 대하여 RCEP협정과 이미 발효된 FTA협정 간의 특혜세율을 비교한 결과, 7개 협정 총 33개 품목의 관세율이 인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최초의 FTA협정인 일본과의 특혜관세 양허수준은 민감품목을 배제하여 개방수준이 높지 않아 주요 수출 30개 품목 중 4개(조미김, 소주, 식초, 막걸리)가 RCEP협정 활용 혜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본 매뉴얼을 통해 RCEP협정의 주요정보, RCEP협정 활용절차와 활용전략을 사전 이해함으로써, RCEP협정이 발효되기 전 충분한 준비과정을 갖고 주어진 통상환경과 기회에 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할 것임.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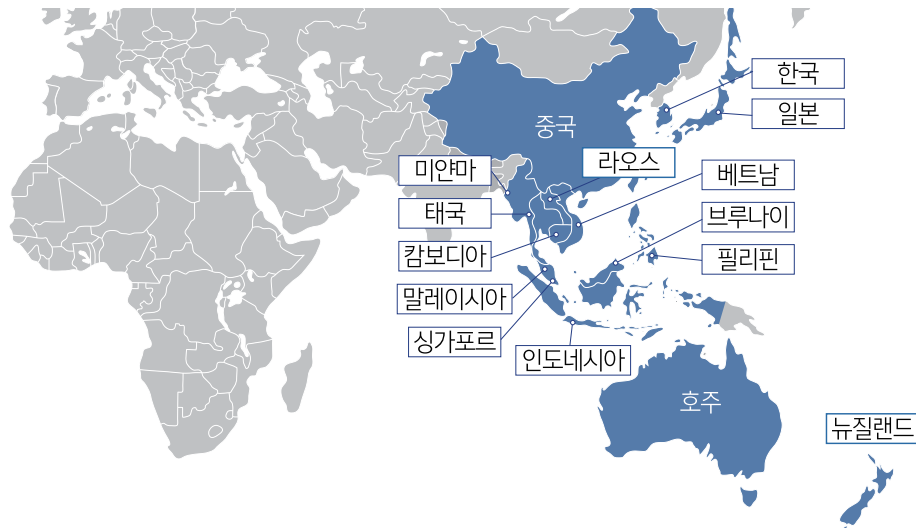
RCEP협정 주요내용

1. RCEP협정 개관
2. RCEP협정 체결현황
3.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 RCEP협정 개관

1. RCEP협정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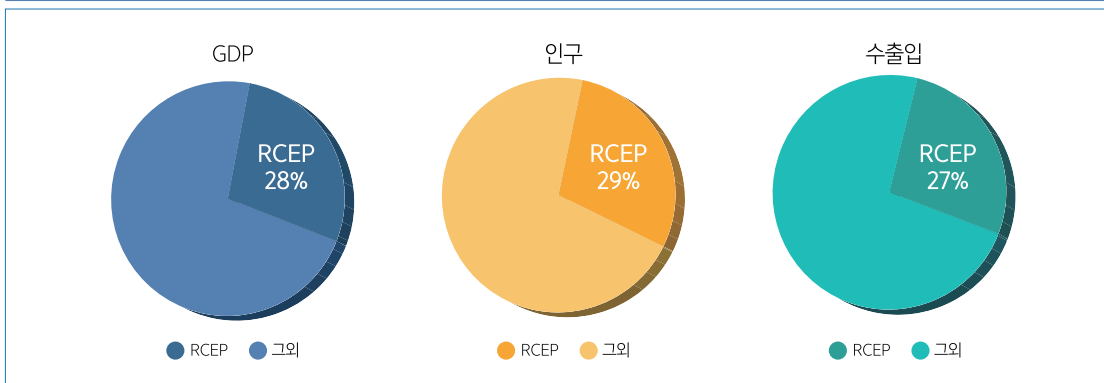
RCEP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참여하여 지역경제통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말하며, RCEP협정 체결을 통해 신규시장 확대 및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됨.



1) RCEP협정은 세계 인구 29%, 세계 GDP 28%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임.

☑ 對세계 RCEP협정 경제규모

World Bank(2019) Data 기준



자료 : 데이터(WB, 2019)

- 2) 우리나라가 신남방정책에서 지향하고 있는 신규시장 확대 및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형성으로 우리나라의 해외시장 확대 및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음.
- 3) RCEP협정 체결로 일본과의 FTA를 체결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일본, 일본·중국이 신규로 시장을 상호 개방하며, 한·중·일 FTA 진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됨.
- 4) RCEP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 RCEP협정 체결 후 10년 경과 시 최대 1.76%의 실질GDP 증가 및 194.56억달러의 후생증대 효과가 예상¹⁾됨.

☑ RCEP협정 포함 최근 진행 중인 주요 다자간 무역협정

협정	대상국가	무역규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5조 4000억 달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CPTPP)	일본·캐나다·멕시코·호주·베트남·말레이시아 등 11개국	2조 9000억 달러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	2조 5000억 달러

자료 : RCEP 타결...26조 달러 새 시장 열린다(한국경제 보도자료/2020.11.23.)

2. RCEP협정 체결일지

- 1) RCEP협정은 2011년 ASEAN이 인도를 포함한 ASEAN+6(한국, 인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체제의 무역협정을 제안하면서 협상이 시작되었음.
- 2) 인도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시장의 개방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RCEP협정 참여 시 무역적자가 심해질 것을 우려하여 2019년 정상회의에서 불참을 선언했음.
- 3) 2019년 11월 4일 공동성명 참여국에서 인도는 제외돼 나머지 15개국만 협정 타결을 선언함.
- 4) 2020년 11월 15일 제4차 정상회의에서 RCEP협정 최종 서명 완료함.
- 5) 향후 절차 : 통상적인 국내 비준 절차를 고려하면 2021년 하반기 이후부터 RCEP협정 발효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RCEP협정 발효 : ASEAN(10개국) 서명국 중 최소 6개국과 非ASEAN 서명국 중 최소 3개국의 국내 비준 절차 완료가 필요하며, 해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발효됨.
 - * 태국, 싱가포르, 호주 등은 “2021년 내 비준 준비 및 절차 진행하겠다.” 밝힘.²⁾

1)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협정 체결국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

2) <https://aseanvietnam.vn/en/post/thailand-works-for-early-parliament-ratification-of-rcep>.
<https://en.qdnd.vn/asean-community/asean-news/singapore-will-soon-ratify-rcep-agreement-minister-524246>.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not-yet-in-force/rcep>.

일자	주요 내용
2011. 11	ASEAN+6(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체제의 RCEP협정을 2012. 12월 개시 선언 목표 설정
2012. 11. 20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계기 RCEP협정 협상개시 선언
2013. 5 ~ 2020. 11	31차례 공식협상 / 19차례 장관회의 / 4차례 정상회의
2019. 11. 4	인도를 제외한 15개국 협정문 타결 선언 2020년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
2020. 11. 15	제4차 정상회의에서 15개국 간 RCEP협정 최종 서명

3. RCEP협정국 정보

1) RCEP협정에는 총 15개국이 참여

한국, ASEAN 10개국(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2) 일본과 최초의 FTA 체결

- (1) RCEP협정 체결로 인해 향후 일본과의 교역에서 FTA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됨.
- (2) 한국의 對일본 수출입 동향(2018-2020)
 - 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2019년 회복세였다가 코로나19 등의 악재로 인해 2020년 다시 적자폭이 증가함.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수출		수입		총교역액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수지
2018년	30,529	13.8	54,604	△0.9	85,133	△24,075
2019년	28,420	△6.9	47,581	△12.9	76,001	△19,161
2020년	25,098	△11.7	46,023	△3.3	71,121	△20,925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정보시스템(K-stat)

2 RCEP협정 체결현황

1. RCEP협정 양허 수준

1) 우리측 시장개방

우리나라 농산물의 경우 추가개방 최소화하기로 함. 핵심 민감품목인 쌀(153%), 고추(270%), 마늘(360%), 양파(135%), 사과(45%), 배(45%)등은 양허 제외로 보호받는 등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2) 상대측 시장개방

우리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상대측 시장개방을 요구해, 아세안시장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같은 축산물과 우유, 버터, 치즈 등과 같은 낙농품 그리고 포도, 사과, 배, 복숭아, 감, 딸기 등과 같은 신선 과일 등의 품목에서 시장접근성이 개선됐음.

(1)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품목 (상대측)

대상국	*양허유형	품목
브루나이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캄보디아	즉시 철폐	치즈, 쇠고기, 고구마 등
	13년	과일주스, 사과, 송로버섯, 참깨
	15년	키위, 사과, 포도, 돼지고기 등
	20년	닭고기, 자두, 수박, 파인애플, 양배추 등
인도네시아	즉시 철폐	인삼류, 배, 사과, 감, 포도 등
	10년	소스류, 면류, 고추류, 강낭콩, 파인애플, 딸기 등
	15년	음료, 마늘, 양배추, 레몬, 녹차 등
	20년	가금육류 등
라오스	즉시 철폐	곡류조제품(콘플레이크, 기타) 등
	15년	자당(고체) 등
	20년	화초류(백합, 국화, 난, 카네이션, 장미 등), 양배추(신선), 올리브(일시저장), 잎담배 등
말레이시아	즉시 철폐	기타육류
미얀마	즉시 철폐	기타산동물, 면, 곡류 등
	13년	식물성유지, 박류, 식물성한약재 등
	20년	기타식물성유지, 유지가공품 등

대상국	*양허유형	품목
필리핀	즉시 철폐	소스류, 사료 등
	15년	맥주, 위스키, 돼지고기, 시금치, 기타과실, 땅콩 등
싱가포르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태국	즉시 철폐	딸기, 감, 면류 등
	10년	과일주스, 초콜릿 등
	15년	마늘, 견과류, 고추류 등
	20년	주류(브랜디, 맥주, 리큐르) 등
베트남	즉시 철폐	배, 포도, 딸기 등
	10년	음료, 인삼조제품, 조제분유, 라면, 커피조제품, 캔디 등
	20년	김 등
	25년	닭고기, 에틸알코올 등
호주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뉴질랜드	※ 기체결 FTA에서 농산물 100% 개방	
중국	즉시 철폐	맥주, 채소종자 등
	10년	포도, 김 등
	15년	과실주스 등
	20년	오징어 등
	35년	홍삼조제품 등
일본	10년	김, 식초, 소주 등
	20년	막걸리 등

참고 : 농식품부 보도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_2020.11.15.)

* 양허유형 : 균등철폐 품목의 철폐 스케줄 완성 연도

ex) 실행세율 20%의 품목이 10년간 철폐일 경우 : 1년마다 2%씩 균등하게 세율 감소함.

※ 단, 국가별 연도는 다음을 말한다.

가. 호주,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 첫번째 연도 :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2) 각 후속 연도 : 그 연도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

나.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1) 첫번째 연도 : 협정의 발효일부터 이후 3월 31일까지의 기간

2) 각 후속 연도 : 그 연도의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12개월의 기간

(2) 기존 FTA 대비 RCEP 수출 유망품목*

① 즉시 철폐 또는 RCEP협정 발효 1년 차 세율 기준 수출 유망품목

대상국	양허유형	품목
필리핀	즉시 철폐	홍삼 제품, 버터를 베이스로 한 제품(2106.90), 기타 리큐르류 및 코디얼, 유자, 냉동 가다랑어·황다랑어, 소주, 과일주스 음료, 인삼음료, 된장, 고추장, 춘장, 장류, 생선묵, 김, 기타 당류, 연유, 단감/감, 곡류 조제품
베트남	발효 1년 차	소주
일본	발효 1년 차	김, 양조식초, 소주, 곡물발효주(막걸리)
인도네시아	즉시철폐	김, 건조김, 건조멸치, 신선/냉장 기타어류, 미역,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홍삼조제품, 겹, 신선배
	발효 1년 차	기타 음료, 냉동 대구, 딸기, 냉동 가다랑어, 고추장
라오스	발효 1년 차	인스턴트 면류
태국	즉시 철폐	딸기, 비스킷/쿠키, 고추장, 곡류 조제품, 변성하지 않는 에틸알콜(주정), 국수, 신선 단감

② 철폐 완성연도 기준 수출 유망품목

대상국	양허유형	품목
브루나이	※ 수출 유망품목(상위 30개) 기준, 기체결 FTA(한-아세안) 관세율이 유리	
캄보디아	15년	기타 리큐르류 및 코디얼, 고추류
인도네시아	10년	딸기, 냉동 가다랑어
	15년	기타 음료, 냉동 대구
	20년	냉동 황다랑어, 고추장
라오스	15년	인스턴트 면류
말레이시아	※ 수출 유망품목(상위 30개) 기준, 기체결 FTA(한-아세안) 관세율이 유리	
미얀마	※ 수출 유망품목(상위 30개) 기준, 기체결 FTA(한-아세안) 관세율이 유리	
필리핀	20년	냉동 고등어
싱가포르	※ 한-싱가포르 FTA, RCEP협정 모두 농식품 100% 관세 철폐	
태국	20년	기타 리큐르류 및 코디얼, 소주
베트남	※ 수출 유망품목(상위 30개) 기준, 기체결 FTA(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관세율이 유리	
호주	※ 수출 유망품목(상위 30개) 기준, 기체결 FTA(한-호주) 관세율이 유리	
뉴질랜드	※ 수출 유망품목(상위 30개) 기준, 기체결 FTA(한-뉴질랜드) 관세율이 유리	
중국	10년	냉동어란·고등어·해삼·대구, 생선묵, 생선 소시지, 포도, 김
	15년	기타 과일주스, 냉동삼치
	20년	냉동오징어
	35년	홍삼조제품
일본	10년	김, 양조식초, 소주
	20년	막걸리

* 농식품수출정보 통계(KATI) 해당국 수출 상위 30개 기준

3) 對일본 수출효과

신규 FTA 체결 효과가 있는 일본 농산물의 경우 전체품목 중 46.2%를 개방하여 다른 FTA(평균 72%)와 비교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했음.

특히 우리나라 수출유망품목 중 소주, 막걸리, 청주, 배, 버섯류 등이 개방되었음. 일본은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 수출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에 좋은 기회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2. RCEP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1) 중북 FTA 비교를 통한 관세혜택 확대

중국·아세안·싱가포르 등 FTA가 겹치는 국가의 경우 협정 간 양허세율 및 원산지결정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수출자에게 유리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

2) 누적기준을 활용한 수출 확대

RCEP협정 발효 전 기존 FTA협정에서 역외산으로 판정된 제품이 누적기준을 활용하여 RCEP협정 회원국으로 수출한다면 '누적기준'을 활용해 관세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어 우리나라 농식품 기업의 수출 확대가 기대됨.

가령 중국·베트남·태국산 원료를 혼합하여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각각 중국, 베트남, 태국으로 수출할 경우를 가정한다면 해당 원료 모두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최종 수입국의 원료만을 역내산으로 인정받게 됨.

하지만 RCEP협정 회원국으로서 누적기준을 활용하면 중국, 베트남, 태국 중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해당 원재료 모두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됨.

3) 인증수출자 제도 취득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기존 아세안과 중국 FTA에서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만 허용됨.

기관발급은 심사절차가 선행되고, 비교적 장시간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자율발급일 경우에 비해 FTA 활용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음. 그러나 이번 RCEP협정으로 인증수출자 자율증명방식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자격을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기업들은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됨.

이에 따라 원산지 발급과 관련된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됨.

☞ 참고1. 우리나라의 RCEP협정 참여국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국가명	2019				2020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일본	2,158.3	22.65	6,012	15.00	1,995.1	20.22	5,806	14.56
ASEAN	1,811.8	19.01	5,742	14.32	1,899.8	19.25	5,791	14.52
중국	1,628.7	17.09	2,529	6.31	1,580.5	16.02	2,514	6.30
호주	161.2	1.69	956	2.38	189.3	1.92	932	2.34
뉴질랜드	39	0.41	667	1.66	42.7	0.43	537	1.35
RCEP(합계)	5,799	60.85	15,906	39.67	6,083	57.83	15,580	39.07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 통계(KATI)

※ 비중 : 국가 전체 “농수산물” 수출/수입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2019년 전체국가 수출금액 : 9,529.2백만 달러, 2019년 전체국가 수입금액 : 40,080백만 달러,
2020년 전체국가 수출금액 : 9,868.8백만 달러, 2020년 전체국가 수입금액 : 39,876백만 달러)

3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1. 도입목적

RCEP협정에서는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을 도입하여 각 회원국의 신속한 통관절차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구분	RCEP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한-호주	한-뉴질랜드
조항유무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협정문	제4장	제4장	제4장	-	제4장	제4장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은 각 협정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 적용에 있어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고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통관을 이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2. WTO 무역원활화협정

RCEP협정 타결('19.11.4) 전에 이미 세계는 다자간 무역협정을 통해 무역원활화에 관한 진전을 이루었음.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이하 TFA)은 2013년 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2014년 11월 무역원활화협정의 WTO 편입을 위한 개정의정서가 채택된 이후 회원국의 2/3 이상이 의정서 수락을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17년 2월 22일에 정식 발효되었음. TFA는 WTO 설립 및 DDA 협상 개시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무역협정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짐.

무역원활화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으나,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을 종합하면, “무역과 관련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절차, 관행, 인프라 등을 제거 또는 간소화, 조화, 자동화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증대시켜 교역을 확대하는 모든 조치” 즉, “무역비용 절감을 위해 통관관련 절차나 제도 등을 간소화, 표준화하는 것”이다.

(출처) 고일훈,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4-051, 2014.12.12., Kotra

3. RCEP협정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조항

이번 장에서는 WTO 무역원활화협정(TFA)과 RCEP협정 간 비교를 통해 협정의 효과를 확인하고, RCEP협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RCEP협정에서는 기존의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상회하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그러한 혜택이 무엇인지 알면 RCEP협정이 발효됨과 동시에 회원국의 협정 이행을 통해 변경되는 제도에 맞추어 그 혜택을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게 됨.

요컨대, RCEP협정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농식품은 향후 아래 내용을 반영하는 협정상대국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① 수입국의 사전심사결정(서) 90일 내에 발급
- ② 수입국의 사전심사결정(서) 최소 3년간 유효(구속력 발생)
- ③ 수입국에서 48시간 내에 신속통관
- ④ 신선농산물과 같은 부패성 상품의 경우 6시간 내에 통관 및 반출 가능
- ⑤ 항공 특송화물의 경우 6시간 내에 통관 및 반출 가능

RCEP협정 이전에 발효된 협정은 위 내용 중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음.

구분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한-호주	한-뉴질랜드
①	○	○	X	X	○(품목분류 40일)
②	X	X	X	○(5년)	○(3년 이내)
③	○	X	X	X	○
④	X	X	X	X	X
⑤	X	X	X	X	○(4시간)

상기 ①~⑤와 관련된 보다 상세한 RCEP협정 상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해당조항	내용
제4.10조 4항	(심사기한) 사전심사*결정은 모든 필요한 정보가 접수된 경우, 90일 내에 가능한 한도에서 신청인에게 발급 된다. * 사전심사의 종류 : 품목분류(수입품목의 HS Code 결정), 협정에 따른 원산지 상품여부, 수입물품의 관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과세가격 산정기준 및 적용
제4.10조 7항	(유효기간) 사전심사 결정은 최소 3년동안 유효 하다.
제4.10조 10항	(구속력) 사전심사 결정은 신청인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 을 가진다.
제4.11조 2항	(통관수속 기간) 물품의 도착과 통관 절차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출로부터 48시간 내에 통관 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제4.11조 6항	(부패성 상품의 반출) 부패성 상품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해당 상품이 6시간 내에 반출 될 수 있도록 한다.
제4.15조 1항	(특송통관) 최소한 항공화물 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 특송화물의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한 통관절차를 다음에 의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라.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이 반출 되도록 규정하는 것

4. RCEP협정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칙의 주요 구성

RCEP협정은 다자간 협정인 만큼 기존의 FTA와는 차별성있게 좀 더 자세하고 폭넓게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칙을 다루고 있음.

해당조항	내용
1) 투명성 (4.5조)	- 수출입통관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표 - 공표된 정보와 갱신 등 관련 문의처, 문의 방법 안내 - 관세관련 규정의 재개정 의견제시와 발효 전 조기공표
2) 통관절차 (4.7조)	- 당사자의 예측가능성, 투명성, 신속통관 등 무역원활화 보장 - 통관절차의 WCO(세계관세기구) 표준 및 권고 관행 준수 - 통관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절차의 검토
3) 선적 전 검사 (4.8조)	-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관련 선적 전 검사 금지 -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 상 선적 전 검사 허용
4) 도착 전 처리 (4.9조)	- 상품 도착 즉시 반출을 위한 정보 제출 허용 - 도착 전 처리를 위한 정보의 전자적 사전 제출
5) 사전심사결정 (4.10조)	- 사전심사(품목분류, 원산지, 과세가격) 결정 발급 - 대리인 신청 및 발급절차의 규정 - 사전심사결정 발급기한 및 효력의 유효기간 - 사전심사결정의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와 발급거부 등
6) 상품의 반출 (4.11조)	- 상품 도착 및 정보 제출 후 48시간 신속 통관 -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및 보증(담보) 제출 요구 - 부패성 상품 도착 및 정보 제출 후 6시간 내 반출 - 물품 검사 시 부패성 상품 우선권 부여 - 부패성 상품의 보관과 상품의 이동
7) 정보기술의 적용 (4.12조)	- 국제 표준에 기초한 통관운영지원 정보기술 적용 - 우범화물선별시스템, 상품자료 제출 등 신속 통관 정보기술 사용 - 무역행정문서의 전자적 이용, 법안 발의 시 국제 표준 고려
8) 공인업체 무역원활화 (4.13조)	- 공인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 - 공인 자격부여 기준(내부통제시스템 등)의 공표 - 추가조치의 내용(서류면제, 검사면제, 즉시 반출 등) - 국제 표준에 기초한 공인업체 제도 개발 권장 - 공인업체 제도에 대한 당사국 간 상호인정 협정
9) 위험관리 (4.14조)	- 위험관리시스템의 채택 및 유지 - 고위험 탁송물 통제집중, 저위험 탁송물 신속 반출 - 탁송물 무작위 선별 - 위험관리 선별기준 마련을 통한 위험평가에 기초
10) 특송화물 (4.15조)	- 항공 특송화물 6시간 내 반출 등 간소화 - 특송화물에 대한 위험관리 및 사후심사 수행 - 상품 유형에 기초한 추가적인 반입절차 요구 허용
11) 사후심사 (4.16조)	- 상품반출의 신속화를 위한 사후심사 채택, 유지 - 위험기초방식의 탁송물 등 선별, 결과 위험관리 활용

해당조항	내용
12) 반출시간연구 (4.17조)	•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측정 지침 사용 • 상품반출 요구시간 주기적, 일관된 방식 측정 및 공표
13) 재심 및 불복청구 (4.18조)	• 행정적, 사법적 불복청구(또는 재심)의 권리, 비차별적 수행 • 결정의 지연에 따른 추가 불복청구 등의 권리 • 재심에 따른 청구인의 불리한 대우 금지
14) 관세협력 (4.19조)	• 절차 이행 및 간소화, 위험관리 발전 등 당사자 간 협력 지원 • 행정적, 법/규정의 수정 등에 따른 당사자 간 통지 • 관세 행정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 공유
15) 협의 및 접촉선 (4.20조)	• 이행 중요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 요청(30일 이내 개시)

5. RCEP협정과 WTO 무역원활화협정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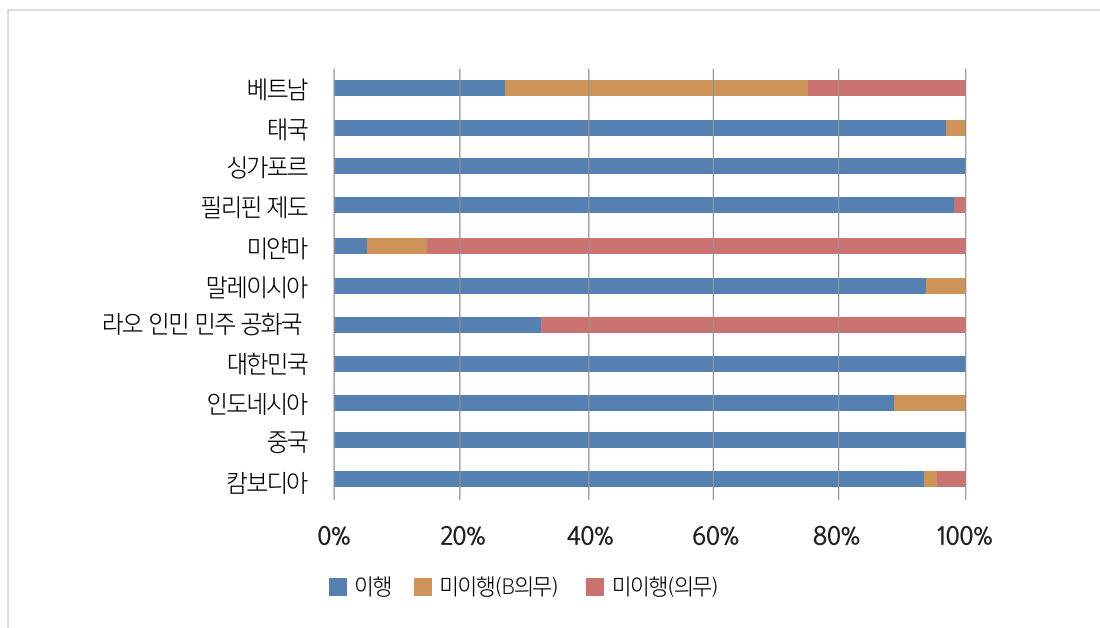
RCEP협정은 전체는 아니지만, WTO 무역원활화협정(총 24조로 구성)의 주요 핵심규정을 담고 있어 효율적으로 이행된다면 상당 부분 우리 농식품의 통관 애로사항이 해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

RCEP협정	WTO 무역원활화협정
제4.1조 정의	-
제4.2조 목적	
제4.3조 적용범위	
제4.4조 일관성	
제4.5조 투명성	제1조 1항 정보의 공표
	제1조 2항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표
	제2조 1항 의견제시 기회 및 발효 전 정보
제4.6조 문의처	제1조 3항 질의처
제4.7조 통관절차	제10조 3항 국제기준의 사용
제4.8조 선적 전 검사	제10조 5항 선적 전 검사
제4.9조 도착 전 처리	제7조 1항 도착 전 처리
제4.10조 사전심사 결정	제3조 사전심사
제4.11조 상품의 반출	제5조 2항 유치
	제7조 3항 반출의 분리
	제7조 9항 부패성 상품
제4.12조 정보기술의 적용	제7조 4항 위험관리
	제10조 2항 사본의 수용
	제10조 3항 국제기준의 사용
	제10조 4항 싱글 윈도우

RCEP협정	WTO 무역원활화협정
제4.13조 공입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제7조 7항 승인된 영업자
제4.14조 위험관리	제7조 4항 위험관리
제4.15조 특송화물	제7조 8항 특송화물
제4.16조 사후심사	제7조 5항 사후검사
제4.17조 반출시간 연구	제7조 6항 평균 반출시간 측정 및 공표
제4.18조 재심 및 불복청구	제4조 불복, 재심, 항소절차
제4.19조 관세협력	제12조 세관협력
제4.20조 협의 및 접촉선	제12조 세관협력
제4.21조 이행약정	

6. WTO 무역원활화협정 이행 현황

WTO 무역원활화협정(TFA)에서는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이 협정 발효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의무(A의무), 발효 후 이행까지 과도기간이 필요한 의무(B의무), 과도기간 및 지원이 필요한 의무(C의무)로 분류하여 이행일을 통보 하도록 하고 있음. RCEP협정 회원국 중 선진국인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한 개도국/최빈국들의 TFA 이행 현황을 확인함으로써 앞서 확인했던 RCEP협정의 무역원활화 규칙 이행 추이를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음.



위 그림의 '이행' 영역의 범위가 클수록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고하다고 볼 수 있겠으며, 이로 미루어보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의 기반이 열악하고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순으로 RCEP협정을 통한 무역원활화의 조기 이행 및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7. 이행약정 기간의 종료일

RCEP협정의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규칙에 따른 일부 약속을 이행할 때는 당사국들의 준비 수준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당사국별 약속이행기간(예 5년) 또는 그 기간의 종료일(예 2023.12.31)을 별도로 명시하였음.
결국 이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규정	중국	캄보디아	인니	라오스	말레이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제4.4조 일관성	5년					5년					
제4.5조 투명성						5년					
제4.6조 문의처						2년					
제4.7조 통관절차						5년					
제4.9조 도착 전 처리						5년				2023.12.31	
제4.10조 사전심사결정		5년	2022.02.28	3~5년		5년				2021.12.31	
제4.11조 상품의 반출				3~5년		5년				2021.12.31	
제4.12조 정보기술의 적용		5년		3~5년		5년					
제4.13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5년		5년		5년				2023.12.31	2022.02.28
제4.14조 위험관리		5년	2022.02.28	3년		5년				2023.12.31	
제4.15조 특송화물				3~5년	2022.02.28	5년				2023.12.31	
제4.16조 사후심사		5년				5년				2021.12.31	
제4.17조 반출 시간 연구						5년					
제4.18조 재심 및 불복청구											2023.03.31
제4.19조 관세협력						5년					
제4.20조 협의 및 접촉선		5년				5년					

4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1. 기존 FTA협정 상의 SPS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해충 또는 질병, 식품·음료·사료의 첨가제, 독소, 질병 원인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사람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우리나라가 맺은 기존 FTA협정에서는 WTO(세계무역기구)의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웠음.

구분	한-중국	한-베트남	한-아세안	한-호주	한-뉴질랜드
협정문 해당조항	제5장	제5장	제8조	제5장 2절	제5장

2. RCEP협정의 의의

RCEP협정은 위생검역조치가 총 1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보다 협력과 의무가 크게 확대되었음. 다음은 WTO의 SPS 협정에 대한 내용임.

WTO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

가. 협정의 배경

인간 및 동식물의 생명 혹은 건강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SPS조치)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규범의 예외로 취급되면서 하나의 비관세무역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규범 마련 필요성 제기되었고, 이에 WTO SPS협정이 체결되었음.

나. 주요내용

1) 협정문 구성

- 14개조 및 3개 부속서로 구성

2) 내용

• 기본적인 권리 및 의무 (제2조)

-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위생조치를 취할 권한을 보유하나 동 조치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 필요
-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고, 과학적 원리에 근거하며 충분한 과학적 근거없이 유지되지 않도록 보장
-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 하에 있는 회원국에 대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
-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적용 금지

- 조화 (제3조)

- 국제기준, 지침 또는 권리가 있는 경우 이에 기초하여 적용

- ※ 관련 국제기준

- . 식품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 . 동물위생 :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

- . 식물위생 : 국제식물보호협약(IPP) 기준

- 다만 과학적 정당성이 있거나 회원국이 관련 규정(제5조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규제유지 가능

- 동등성 (제4조)

- 수출회원국이 자국의 조치가 수입회원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달성한다는 것을 동 수입회원국에게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사용조치가 자국 또는 여타국 조치와 상이하더라도 동등한 것으로 수락

- 위험평가 (제5조)

- 동.식물 위생규제의 객관적 지표로서 위험평가(risk assessment)를 활용

- 위생 또는 식물위생보호의 적정수준 결정 시, 회원국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목표 고려, 또한 필요한 정도 이상의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되지 않도록 고려

- 병해충 안전지역 및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적 조건에의 적응(제6조)

- 상품의 원산지 및 도착지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상의 특징에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를 적합하도록 보장

- 병해충 안전지역과 병해충 발생이 적은 지역의 개념 인정, 지역의 결정은 지리, 생태학적 체계 등의 요소에 근거

- 투명성 (제7조)

-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생 또는 식물위생조치의 변경을 WTO 사무국에 통보

- 분쟁해결 (제11조)

- WTO협정 상의 분쟁해결 양해절차 규정을 적용 (제11조)

-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위원회 설치 (제12조)

- 협정규정 이행에 필요한 기능 수행

- 특정 위생 또는 식물위생 사안에 대하여 회원국 간의 특별 협의 또는 협상을 장려, 촉진

다. 평가

- 그간 GATT 규정의 예외로 인정되어 오던 각국의 동.식물위생규제는 금번 WTO 체제 하에 신설되는 협정문 안으로 편입

- 따라서 농산물 자유무역에 있어 각국의 동.식물 위생제도가 하나의 비관세장벽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사전 예방

3. RCEP협정을 통한 SPS 절차 규정 강화, 수입 농식품 안전성 확보

- 1) 17개조*로 구성된 RCEP 협정의 SPS 챕터는 14개조로 구성된 WTO SPS 협정문과 5~7개조로 이루어진 기체결 FTA의 SPS 협정문과 대비하여 높은 수준의 절차적 규범과 안전성 확보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 (RCEP SPS 협정문) 목적, 적용범위, 정의, 일반규정, 동등성, 지역화, 위험분석, 감사, 증명, 수입검사, 긴급 조치, 투명성, 협력 및 역량강화, 기술협의, 접촉선 및 권한당국, 이행, 분쟁해결 조항으로 구성

2) 지역화 인정 절차규정 구체화

WTO SPS 협정에 따른 지역화 개념을 인정하여, 해충·질병 비발생지역 또는 저발생지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고, 지역화 인정 절차 이행을 위한 수입국의 절차적 의무도 구체화되었음. 즉, 지역화 평가 개시와 절차를 수출국에 설명해야 하고, 불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합리적 기간 내에 의무적으로 답변해야 함.

3) 동등성 인정 절차규정 구체화

WTO SPS 협정에 따른 동등성 개념을 인정하여, 수입국이 적용하고 있는 조치와 동일한 수준의 위생·검역 조치를 수출국이 취한 경우 이를 동등하다고 인정해야 함. 또한, 동등성 인정 범위를 개별 조치뿐만 아니라 그룹·제도기반 조치로 확장하고, 동등성 인정 절차 이행을 위한 수입국의 절차적 의무도 지역화 절차와 유사하게 구체화됨.

4) 위험분석 의무 강화

해외 농산물 수입허용을 위한 과학적인 평가절차인 '위험평가'(WTO협정상 명시)와 '위험관리·위험정보 교환'이 포함된 '위험분석' 개념을 포괄적으로 도입하고 절차적 의무를 강화하였음. 즉, 평가 시 발생 가능한 모든 자연요소를 통보해야 하고, SPS 조치 검토 만을 이유로 해당 상품 수입을 금지할 수 없음.

5) 감사 조항

수입국은 수출국의 SPS 통제·관리 체계를 평가하는 감사 권한을 갖되,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6) 수입검사 조항

수입국은 수입 농·축산물 검사 시, WTO SPS 위원회와 관련 국제기준(국제식품규격위원회, 세계동물보건 기구, 국제식물보호협약 사무국)을 고려하고, 부적합 발견 시 수입업자와 수출국(필요 시)에 통지해야 함.

7) 긴급조치조항

RCEP협정에서는 수입국이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보호하고,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수출국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코로나-19,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수입금지 등 긴급조치 채택 시, 합리적 기한 내 또는 수출국 요청 시 이를 재검토하고, 수출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재검토 후에도 긴급조치가 유지될 경우, 수입국은 요청 시 사유를 설명하고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해야 함.

8) 투명성 강화

RCEP협정에서는 투명성 관련 조치도 강화되었음.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SPS 조치를 통보하고 상대국 요청 시 수입요건, 수입허용절차 등 SPS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요청이 있을 경우, SPS 조치 초안은 30일 내, 최종본은 합리적 기간 내에 영문으로 제공해야 함.

9) 분쟁해결 조항

SPS 분쟁은 발효 시에는 RCEP협정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되, 발효 후 3년 내에 재검토하여 이후 적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희망국은 RCEP협정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되 비희망국은 다른 당사국과 협의한 후 적용 가능함.

10) 수입 농식품 안전성 확보

RCEP협정문에는 수입 농식품의 안전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신규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즉, 수입검사서에서 중대한 부적합 발생 시 수출국에 개선조치 논의를 요구(수입검사 제5.10조 4항)할 수 있고, 수출된 상품에서 위험 발견 시 수출국은 수입국에 신속하게 통보(투명성 제5.12조 12항)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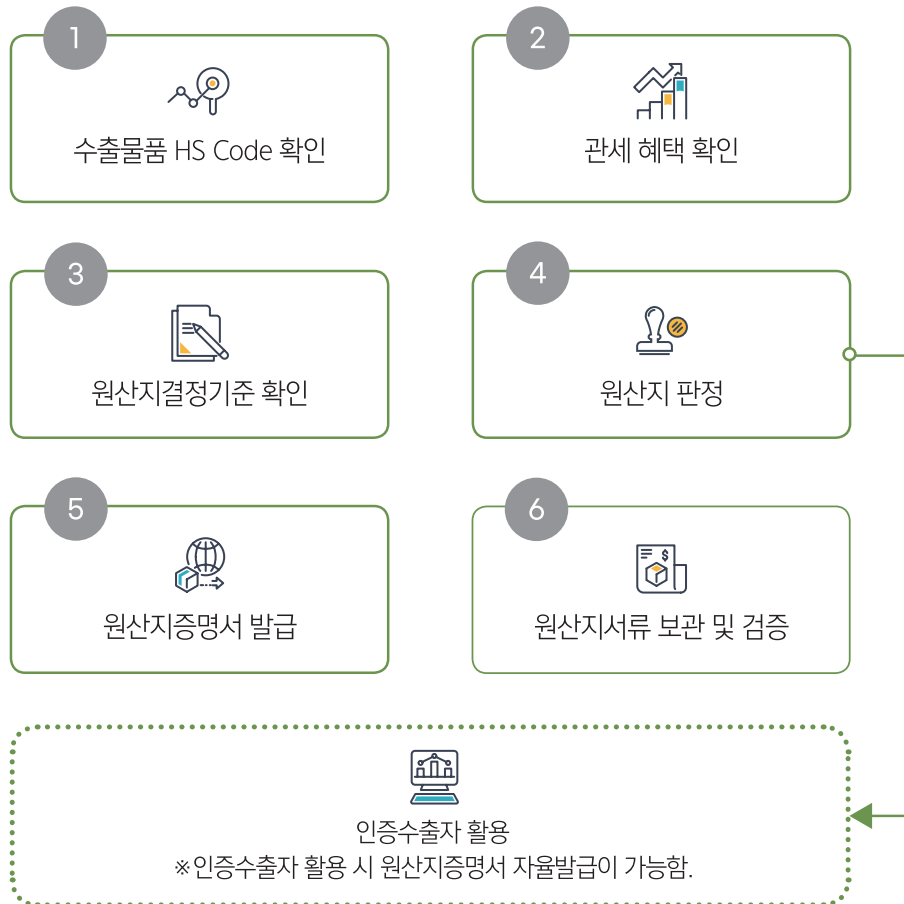
II

RCEP협정 활용절차

1. RCEP협정 수출활용 프로세스
2. 수출물품 HS Code 확인
3. 관세혜택 확인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5. 원산지 판정
6. 원산지증명서 발급
7. 원산지서류 보관 및 검증
8. 인증수출자 활용

1 RCEP협정 수출활용 프로세스

수출 시, RCEP협정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음.



RCEP협정 활용을 위해 먼저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여 수입국에서의 RCEP협정 활용에 따른 관세 혜택이 있는지 확인함. 그 후,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고 BOM, 구매자료 등을 준비하여 원산지판정을 진행.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련된 서류는 보관하여 검증에 대비하여야 함.

※인증수출자를 취득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함.

2 수출물품 HS Code 확인

1. HS 협약

HS 협약이란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국가 간 거래되는 상품의 품목분류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시킬 목적 등으로 제정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and its annex)을 말하고, HS 협약의 부속서에 규정되어 있는 개별 상품분류 코드를 HS CODE라고 함.

2. HS CODE의 이해

HS CODE는 전 세계 모든 물품을 97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숫자코드화한 상품분류코드이며, 6단위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7단위부터는 각 국가별로 6단위 범위의 물품을 더 세분화하여 사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재 10단위를 사용하고 있으며, 실무에서는 HS CODE의 또 다른 표현으로 HS, 품목분류, 세번부호라고 쓰기도 함.

HS CODE 맨 앞부터 2단위까지를 “류(Chapter)”라 하고, 4단위까지를 “호(Heading)”, 6단위까지를 “소호(Sub-Heading)”라고 함.

즉, 물품을 류(2단위) → 호(4단위) → 소호(6단위)로 점점 세분화한 구조라고 볼 수 있음.

또한, HS CODE는 5년마다 개정되고 있음. 현재는 2017년판이 사용되고 있고, 다음 개정은 2022년에 예정되어 있음. RCEP협정의 경우 2012년판 HS CODE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HS CODE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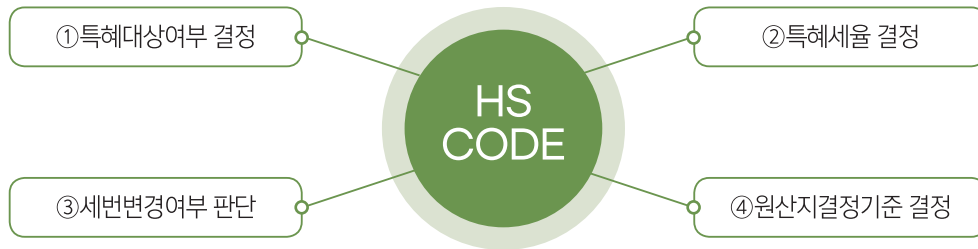
가래떡의 우리나라 HS CODE는 1901.90-9091이고 다음과 같은 의미임.



■ 류 (2단위) : 곡물·곡분의 조제품
■ 호 (4단위) : 곡물·밀크의 조제품
■ 소호 (6단위) : 기타 조제품

3. HS CODE의 중요성

제품의 HS CODE에 따라 특혜대상여부, 특혜적용세율, 원산지결정기준이 확인되고, 원재료의 HS CODE에 따라서 원산지결정기준 중 세번변경기준(제품과 원재료의 HS CODE 비교 기준) 충족여부가 확인됨으로써, HS CODE는 RCEP협정 활용의 출발점이자 중요 요소임.



4. HS CODE 확인하는 방법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확인", "관세사에게 자문", "관세청에 질의" 하는 방법이 있음.

1) 관세청의 "관세법령정보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HS CODE를 확인하는 방법임.

- ①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로 검색 → ② 세계HS → ③ 속견표에서 검색

또한 품목분류한 국내 사례와 다른 나라의 HS CODE를 확인할 수 있음.

2) 관세사에게 자문

수출물품의 HS CODE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HS 통칙, 주, 해설서 등의 규정을 이해하고 적용하여야 함. 정확한 이해 부족으로 사용자의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HS CODE를 적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HS CODE의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자문을 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음.

3) 관세청에 질의

관세청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공식적이고 안전한 방법임. 품목분류사전심사 결과가 통지되면 수출입 신고시 통지된 HS CODE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 ①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서와 물품설명서 작성
- ②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
- ③ 견본 제출(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https://www.customs.go.kr/cvnci/>) → 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음.

5. 농수산물식품 관련된 HS CODE

농수산물식품과 관련된 물품의 HS CODE 2단위 류는 다음과 같음.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류	품 명
01	산 동물
02	육과 식용설육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
04	낙농품·조란(鳥卵)·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05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제2부. 식물성 생산품

류	품 명
06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07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
08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9	커피·차·마테 및 향신료
10	곡물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12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3	락·검·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수액과 엑스
14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제3부. 동식물성유지 및 이들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류	품 명
15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류	품 명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7	당류와 설탕과자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9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20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21	각종의 조제식료품
22	음료·알코올 및 식초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3 관세혜택 확인

1. RCEP협정 관세율

RCEP협정국 간 원산지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관세율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실행세율보다 낮은 관세율을 말함. 각 협정국은 부속서 I 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기존 관세율보다 양허(인하하거나 철폐)하도록 하고 있는데, HS CODE별로 ①즉시 철폐 ②연도별 점진적인 철폐 ③관세율유지 ④양허제외 등으로 나뉨.

RCEP협정의 실무협상 당시 2014년도 실행세율을 기준으로 양허세율을 연도별로 정했기 때문에, RCEP협정 관세율이 현재 적용되는 실행세율보다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어, A협정국은 B품목에 대해 20%의 실행세율을 매년 2%씩 10년에 걸쳐 인하하기로 하여 발효 3년차에는 14%의 실행세율이 적용됨.

발효 3년차에 A협정국이 국내 판단에 의거, B품목의 실행세율을 10%로 낮추었다면 RCEP협정 관세율은 14%인 반면에 실행세율은 10%로 오히려 RCEP협정 관세율이 더 높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RCEP협정을 활용한 실익이 없게 됨.

2. RCEP협정 관세율 확인

①협정문에서 확인 ②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③TradeNAVI에서 확인 ④협정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하는 방법이 있음.

협정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발효 전에 미리 RCEP협정 관세율 확인이 가능하지만 현재의 실행세율은 확인할 수 없음.

관세법령정보포털과 TradeNAVI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현재의 실행세율은 확인 가능하며, 발효 이후 RCEP협정 관세율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업데이트 주기가 있어 검색 당시 각국의 관세율표가 최신버전이 아닌 경우가 있음에 유의)

협정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은 가장 정확한 자료이지만, 상대국 언어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검색 시 유의하여야 함. 발효 후에는 해당 사이트에서 RCEP협정 관세율 확인이 가능함. (다만, 수입국의 여건에 따라 업데이트 시점은 상이할 수 있음)

위의 방법으로 실행세율과 RCEP협정 관세율을 1차적으로 확인한 후 수입자를 통해 최종 확인하는 것을 추천함. 다른 나라의 관세율표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적용하는 HS CODE와 수입국에서 적용하는 HS CODE가 이론적으로는 같아야하나 실무적으로 종종 다를 경우가 있기 때문임.

3) TradeNAVI에서 확인

www.tradenavi.or.kr → 대상국가 선택 → HS CODE 입력 → 검색

The screenshot shows the TradeNAVI website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links for '국가선택' (Country Selection),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중국' (China), '코로나' (COVID-19), and 'HS코드' (HS Cod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FTA/관세' (FTA/Tariff) and '품목별 정보검색' (Search by Item). The search results for HS Code 2209 are displayed, showing the product description 'Vinegar and substitutes for vinegar obtained from acetic acid' and the tariff rate '8%'.

4) 협정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

인터넷에서 해당 국가의 관세율표를 검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정확한 자료이기는 하나, 활용하기가 어려움. 일본의 경우 www.customs.go.jp/tariff/ → (최신 실행관세율표)클릭 → (해당 류)의 세율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Japanese Customs website (www.customs.go.jp).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輸入統計品目表 (実行関税率表)' (Import Statistics Item Table (Execution Tariff Table)). A red arrow points to the '2021年1月1日版' (2021 January 1st Edition) link. Below the link, there is a table showing the tariff rates for various goods. The table has columns for '品名' (Item Name), '税率' (Tariff Rate), and '備考' (Remarks). The first row shows a tariff rate of 8% for 'その他のもの' (Other items).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1. 원산지의 중요성

RCEP협정 특혜관세는 수입당사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수출국의 원산지 상품이어야만 적용 가능하므로 수출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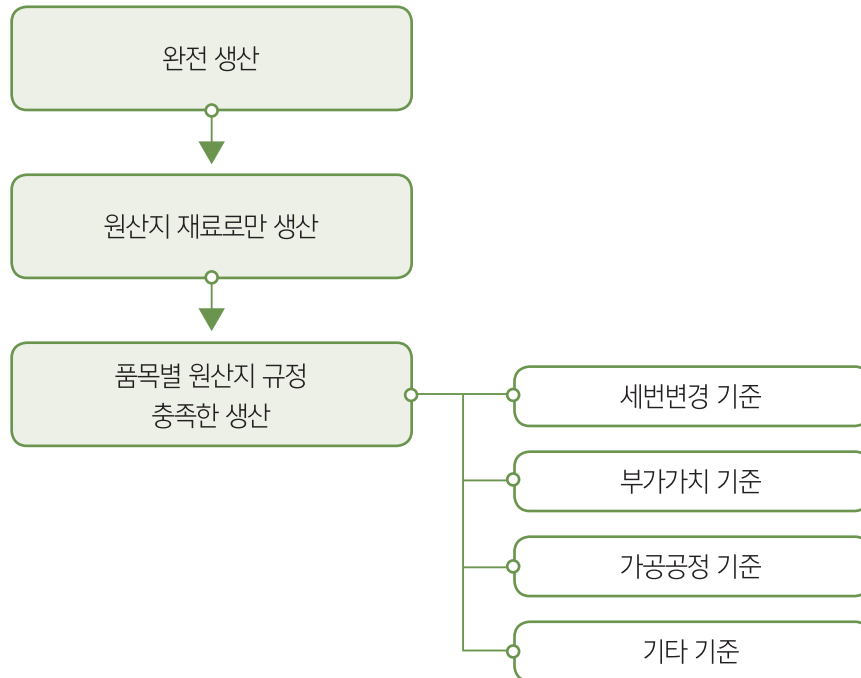
2. 원산지 상품의 의미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그림과 같이 ①완전 생산한 경우 ②원산지 재료로만 생산한 경우 ③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도록 생산한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됨.

“①완전 생산”이란 물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생산(재배, 수확, 농작, 사육, 채집, 수집, 포획, 어로, 양식,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 획득의 방법을 말함. 이하 동일)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등이 있음.

“②원산지 재료로만 생산”이란 물품 생산에 투입된 모든 재료가 원산지 재료인 경우를 말함.

“③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도록 생산”이란 물품의 HS CODE에 대해 정해져 있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도록 생산한 경우를 말함.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대표적으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음.



3. 원산지결정기준 개요

농산물과 같이 한 나라에서 온전히 재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배한 나라가 원산지가 될 것이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

그러나 2차 가공물품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의 원재료가 섞여서 생산되고 있으므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어려움.

★ 예를 들어 밀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밀가루로 가공하였다면 밀가루를 한국산으로 봐야할까, 아니면 한국산으로 볼 수 있을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역내산·역외산을 확인해야 함.

이러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데 이것을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함.

즉,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면 한국산이 되고, 충족하지 못하면 한국산이 될 수 없음.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원산지결정기준만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물품이라도 FTA 협정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물품의 역내산·역외산 여부인 원산지의 판정결과는 FTA 협정별로 다르게 나올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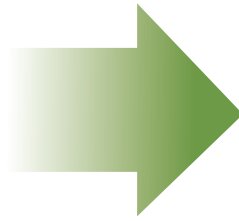
따라서, FTA에서 원산지란 FTA 특혜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음.

■ 호주산 밀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밀가루로 가공한 경우 밀가루의 원산지

→ 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RCEP협정, 한-아세안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고, 한-중국, 한-뉴질랜드FTA에서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밀(호주산) : 1001.99



밀가루 : 1101.00

FTA	밀가루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RCEP협정	2단위 세번변경	한국
한-아세안	2단위 세번변경	한국
한-중국	완전 생산	미상
한-뉴질랜드	2단위 세번변경(10류 제외)	미상

4. 주요한 원산지결정기준

1) 세번*변경 기준(Change in Tariff Heading)

*세번=세번부호인 HS CODE를 의미함

완제품의 HS CODE와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의 일정 단위가 다른 경우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아래와 같은 유형이 있으며, 각 단위는 HS CODE 앞에서부터의 자릿수를 의미함.

유형	기호	원산지 총족 조건
2단위 세번변경	CC	완제품HS 2단위 ≠ 비원산지원재료HS 2단위
4단위 세번변경	CTH	완제품HS 4단위 ≠ 비원산지원재료HS 4단위
6단위 세번변경	CTSH	완제품HS 6단위 ≠ 비원산지원재료HS 6단위

CC : Change of Chapter

CTH : Change of Tariff Heading

CTSH : Change of Tariff Sub-Heading

■ 미국산 설탕, 딸기향료, 딸기색소, 물엿으로 캔디를 생산한 경우

(원산지 '미상' 으로 가정)



설탕과 물엿의 HS 2단위와 캔디의 2단위가 “17”로 같으므로 2단위 세번변경은 불충족, 모든 재료와 캔디의 4단위는 모두 다르므로 4단위 세번변경은 충족함.

2단위 세번변경				4단위 세번변경		
	재료	캔디	비교	재료	캔디	비교
설탕	17	17	=	1701	1704	≠
딸기향료	33	17	≠	3302	1704	≠
딸기색소	32	17	≠	3203	1704	≠
물엿	17	17	=	1702	1704	≠
결과	불충족			충족		

2) 부가가치 기준

물품 생산과정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부가가치를 창출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임. 부가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①공제법(간접법) ②집적법(직접법) ③순원가법 ④MC법이 있으나, RCEP협정에서는 공제법과 집적법만 사용함.

- ①공제법(BD : Build-Down Method) : 물품의 FOB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공제한 금액을 물품 FOB가격으로 나눈 다음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

$$\text{공제법(BD)} = \frac{\text{FOB가격} - \text{비원산지 재료비(VNM)}}{\text{FOB가격}} \times 100$$

- ②집적법(BU : Build-Up Method) : 물품의 FOB가격에서 원산지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 이윤, 그 밖의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하는 방법

$$\text{집적법(BU)} = \frac{\text{원산지 재료비(VOM)} + \text{직접노무비} + \text{직접경비} + \text{이윤} + \text{그 밖의 비용}}{\text{FOB가격}} \times 100$$

3) 가공공정 기준

특정한 가공공정을 수행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임.

4) 기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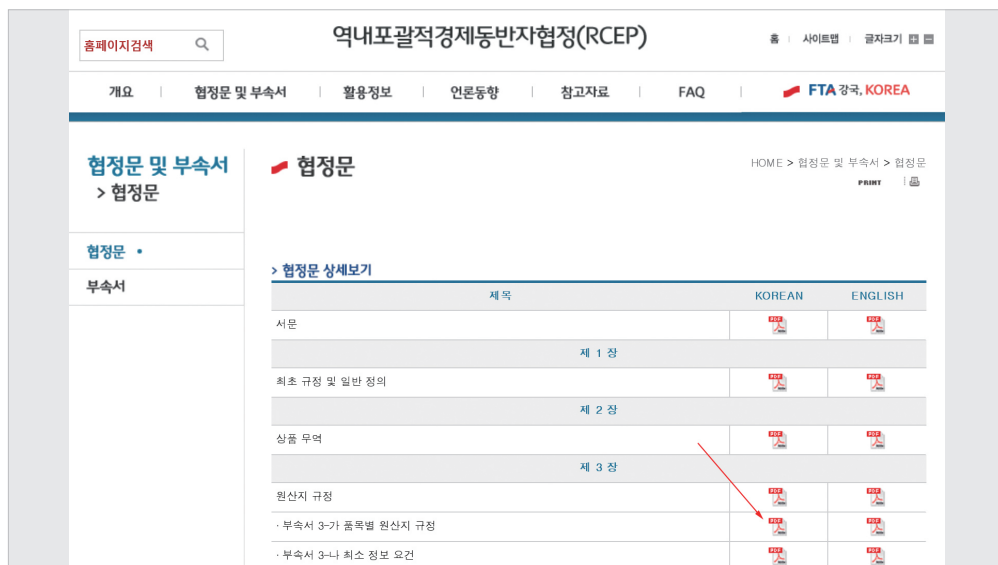
원산지 기준을 완화 또는 강화하거나, 원산지 결정 편의를 위하여 최소공정 및 가공, 최소허용수준, 포장과 포장재료 및 용기의 취급,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간접재료, 대체가능 상품 또는 재료, 생산에 사용된 재료, 직접운송 등의 기준이 있음.

5.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방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①협정문 ②FTA관세법 시행규칙 ③Yes FTA에서 확인할 수 있음.
다만, RCEP협정이 발효 전이라 현재는 “①협정문”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상태임.

1) 협정문에서 확인

www.fta.go.kr → 서명/타결국가 → RCEP → 협정문 및 부속서 → 협정문 → 원산지 규정 →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HS 코드(HS2012)			품목명	품목별 원산지 규정
류	호	소호		
		2008.19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20	파인애플	2단위 세번변경 기준
		2008.30	감귤류 과실	2단위 세번변경 기준

2) FTA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

발효시 FTA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서 확인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유무역협정

자치법규 행정규칙 판례·해석례등 별표·서식 학칙·규정

대법령 ○ 외국어번역 ○ 최신법령 ○ 조약

문제목 부칙 제정·개정문

본문 제정·개정이유 별표·서식 연혁 3단비교 신규법비교 법령체계도 법령비교

판례 연혁 위임행정규칙 규제 생활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시행 2021. 1. 1.] [기획재정부령 제786호, 2020. 4. 1., 일부개정]

☐ [별표 15]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5호 관련)

☐ [별표 15의2] 중미 공화국과들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제4조제16호 관련)

☐ [별표 15의3]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제4조제17호 관련)

☐ [별표 16]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제15조제3항제1호 관련)

2) YesFTA에서 확인

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원산지결정기준 → HS CODE 입력 → 검색

YesFTA

FTA자료실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FTA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전체(All FTA)	칠레 Chile	싱가포르 Singapore	유럽자유무역연합 EFTA	아세안 ASEAN 2012
아세안 ASEAN 2017	인도 India	유럽연합 EU	페루 Peru	미국 USA
터키 Turkey	호주 Australia	캐나다 Canada	중국 China	뉴질랜드 NewZealand
베트남 Vietnam	콜롬비아 Colombia	중미 Central America	영국 Great Brit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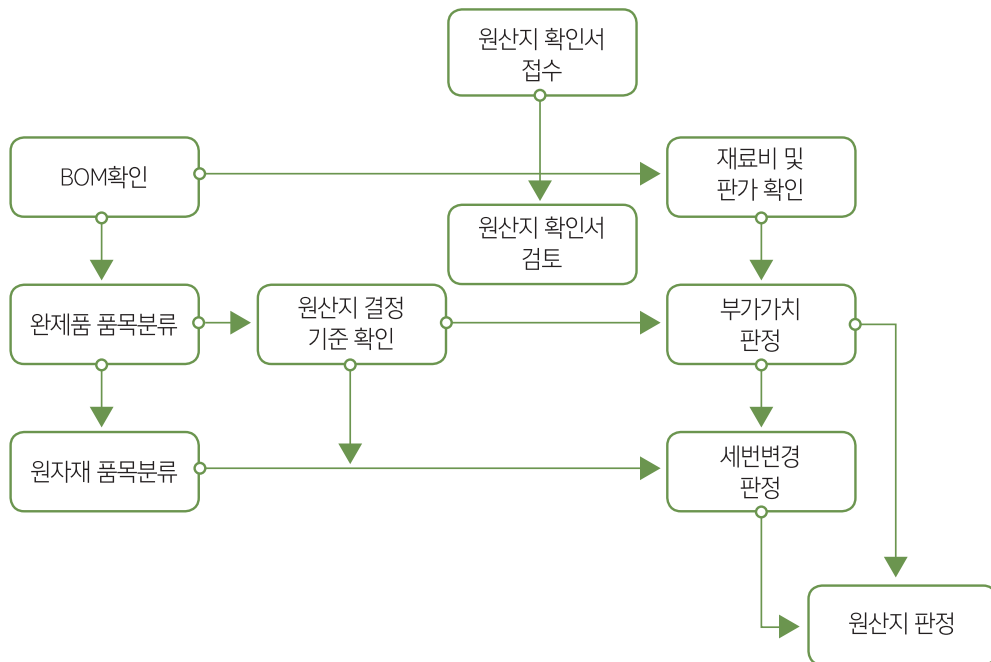
☒ HS코드(HS Code)
 ☐ 한글 품목명(Korea Item Name)
 ☐ 영문 품목명(English Item Name)

220290

5 원산지판정

1. 원산지판정 절차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아래 그림의 절차에 따라 1단계로,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을 작성한 후, BOM 상의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해 품목분류를 함. 2단계에서는 BOM 상의 완제품의 판매단가와 원재료의 재료비를 확인함. 3단계에서는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원산지(포괄)확인서 또는 원산지증명서가 확인된 원재료에 대해서만 해당 원산지로 인정하여야 함. 즉, 원재료의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확인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산지 “미상”으로 처리함. 마지막으로 완제품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세번변경, 부가가치 등이 부합하는지를 비교 판단하여 부합할 경우에는 “한국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상”으로 최종 판정함.



2. 원산지판정 사례

다음은 배주스와 도라지를 원재료로 생산된 배도라지주스(2009.90)에 대해 원산지판정한 사례임.

- 1) 1단계 : BOM을 작성한 후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해 품목분류.
- 2) 2단계 : 완제품의 가격과 원재료의 재료비 작성.
- 3) 3단계 : 원재료의 원산지를 작성.

1단계			2단계		3단계
배도라지주스			2009.90	1000	
원재료	소요량	구매처	HS	단가	금액
배주스	200	A	2009.89	2	400
도라지	20	B	0706.90	10	200
정제수	200		2201.90	0.01	2
플라스틱병	1	C	3923.30	100	100
			702		

4) 4단계 : 완제품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역내산·역외산 여부를 판정함.

완제품 HS CODE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라 HS CODE의 변경여부, 역내부가가치의 비율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정함.

- ① RCEP협정문 상, 배도라지주스(2009.90)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또는 계약당사자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이상(RVC 40)일 것”으로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가 충족되면 한국산으로 판정됨.
- ②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검토하면, 완제품의 2단위 “20”과 비원산지 재료인 배주스의 2단위가 “20”으로 완제품과 동일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③ 부가가치를 공제법으로 계산하면

$$(FOB가격(1,000) - 비원산지 재료비(702) / FOB가격(1,000) = 29.8\%$$
 40%미만이므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함.
- ④ 따라서, 본 사례의 배도라지주스는 RCEP협정 적용 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할 수가 없음. RCEP협정 회원국에서 수입할 시 RCEP협정 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

3. 원산지관리 전략

RCEP협정을 포함한 FTA에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에 맞도록 한국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그런 사실이 서류로써 증빙이 되어야 함.

위 배도라지주스의 경우에도 적절한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않아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 서류만 있다면 충분히 한국산으로 인정될 수 있음.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 위 배도라지주스를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1) 방법1: 배주스 구매처 A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

배주스 원산지가 “KR”(한국산)로 되어 있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하면 비원산지 재료 → 원산지 재료로 변경됨.

세번변경기준에서는 비원산지 재료의 HS CODE에 대해서만 변경이 요구되므로, 원산지 재료는 HS CODE가 동일해도 상관없음. 비원산지 재료인 도라지, 정제수, 플라스틱병의 2단위 세번은 모두 “20”과 다르므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게 되어 배도라지주스는 “한국산”이 됨.

배도라지주스			2009.90	
원재료	소요량	구매처	HS	원산지
배주스	200	A	2009.89	KR
도라지	20	B	0706.90	미상
정제수	200		2201.90	미상
플라스틱병	1	C	3923.30	미상

원산지확인서를 수취(KR)하고, 2단위 세번변경 기준을 충족하여 한국산 판정

2) 방법2: 도라지 구매처 B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

도라지의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된 경우 부가가치는 $(1000-502) / 1000 = 49.8\%$ 가 되어 40% 이상이 됨. 따라서 여전히 2단위 세번변경기준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부가가치 40%이상을 충족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배도라지주스는 “한국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됨.

배도라지주스			1000		
원재료	소요량	구매처	단가	금액	원산지
배주스	200	A	2	400	미상
도라지	20	B	10	200	KR
정제수	200		0.01	2	미상
플라스틱병	1	C	100	100	미상

부가가치기준 충족하여 한국산 판정

비원산지 재료비 합 → 502

4. 원산지(포괄)확인서와 인정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국내에서 구매한 원재료의 원산지가 “한국산”임을 인정하는 서류임.

(양식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약칭: FTA관세법) 시행규칙에 있으며 작성 요령을 참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재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 ·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충족 미충족 (Y) (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작 성 자(Declarer) : (서명 또는 인)(Signature)
 직 위(Title) :
 상호 및 주소(Company Name/Address) :
 작 성 일(Date) : 년 월 일 (YYYY/MM/DD)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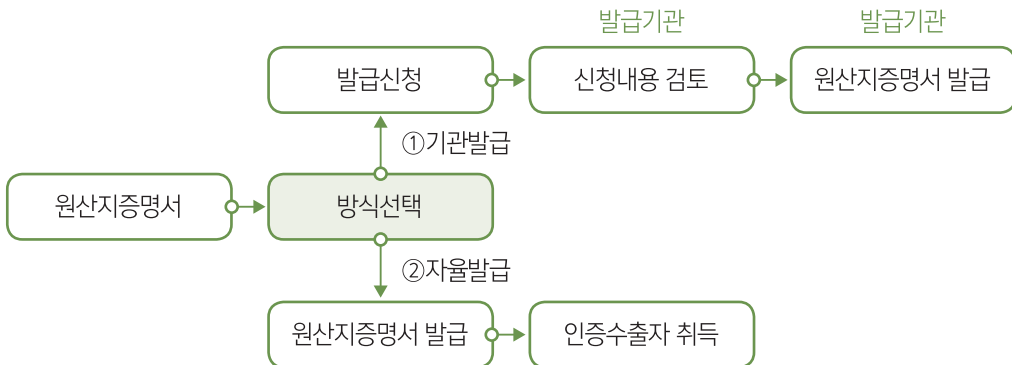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에 따라 FTA 활용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서류 제출로 원산지(포괄)확인서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분	서류명	구분	서류명
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수산물	물김 구매확인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서		마른김 구매확인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품질인증서
	지리적표시 등록증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수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축산물	축산품(소) 등급 판정확인서	전통식품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제주특별자치도 우수제품 품질인증서
		지역특산품	

6 원산지증명서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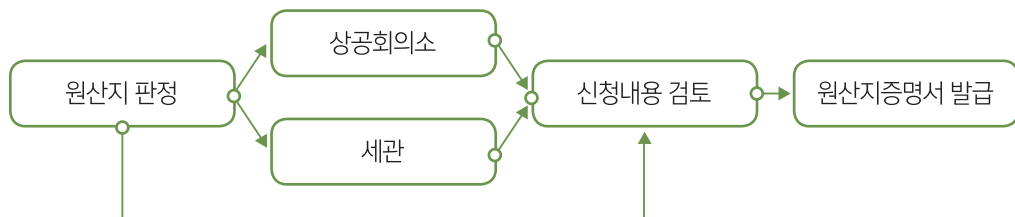
1. RCEP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RCEP협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①기관발급 ②자율발급(인증수출자인 경우)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수출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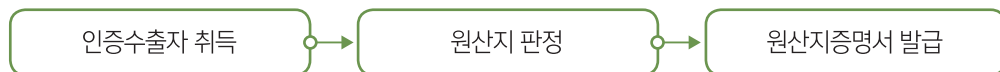
2. 기관발급

원산지판정 자료와 함께 발급기관(상공회의소 또는 세관)에 발급신청하면 발급기관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한 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함.



3. 자율발급

인증수출자의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인증수출자를 취득해 두고, 원산지판정 후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음. 원산지증명서 양식 등 구체적인 절차는 발효시점에 공지될 것으로 예상됨.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직접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므로 편리한 이점이 있지만, 원산지판정 절차 누락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자율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7

원산지서류 보관 및 검증

1. 원산지서류의 보관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이 발급된 경우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1) 보관대상 서류

구분	보관서류
수입자	① 원산지증명서 사본 ② 수입신고필증 ③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④ 지식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자료 ⑥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⑦ 사전심사서(사전심사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구분	보관서류
수출자	①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② 수출신고필증 ③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⑤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구입 관련 증빙서류 ⑥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⑧ 생산자·원재료 공급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 서류
생산자	①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④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구입 관련 증빙서류 ⑤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⑥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⑦ 원재료 공급자·생산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 서류

2) 보관기간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다만, RCEP협정 발효 시점에 FTA관세법에서 달리 정할 수도 있음.

3) 보관매체

서면, 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 등 자료전달매체, 서버 등 자료보관매체 등을 이용하여 보관할 수 있음.

2. 원산지 검증

수입국은 수입된 물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증절차를 수행할 수 있음.

- ① 수입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②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③ 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 또는 권한있는 당국에 추가 정보의 서면 요청
- ④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회계서류를 포함한 원산지를 언급하는 기록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자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 검증
- ⑤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절차

즉, 간접검증과 직접검증(방문검증)이 모두 가능하며, 직접검증은 간접검증 수행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8 인증수출자 활용

1. 인증수출자 개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RCEP협정의 경우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증수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2. 인증수출자의 종류 및 인증기간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
인증기관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세관	
인증기준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3. 인증수출자 혜택

- 1) 한-EU·한-영국 FTA의 경우에는 6,000유로 초과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인증수출자이어야 발급 가능하며, RCEP협정에서는 인증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함.
- 2) 기관발급의 경우 원산지 발급신청 시 BOM, 제조공정도 등 첨부서류 제출이 생략됨.

4. 인증수출자 유의사항

- 1) 인증을 받더라도 원산지 판정은 업체 책임하에 이루어짐. 인증수출자 지정은 자율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지만 해당 업체 수출물품에 대해 한국산으로 공인한 것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더라도 업체 책임 하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하여야 함.
- 2) 인증자라도 서류보관의무 및 검증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과정에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원산지 판정관련 증빙서류 보관의무 및 사후 검증에 대한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5. 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인증심사 기준은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구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음.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절차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원산지관리 전담자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외부전문가 지정 가능)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함.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 거부 ② 최근 2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 위반 ③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 발급신청

구분	품목별 인증수출자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원산지관리 전담자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외부전문가 지정 가능)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

※ 품목별/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 신청업체가 상기 인증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소정의 심사절차를 완료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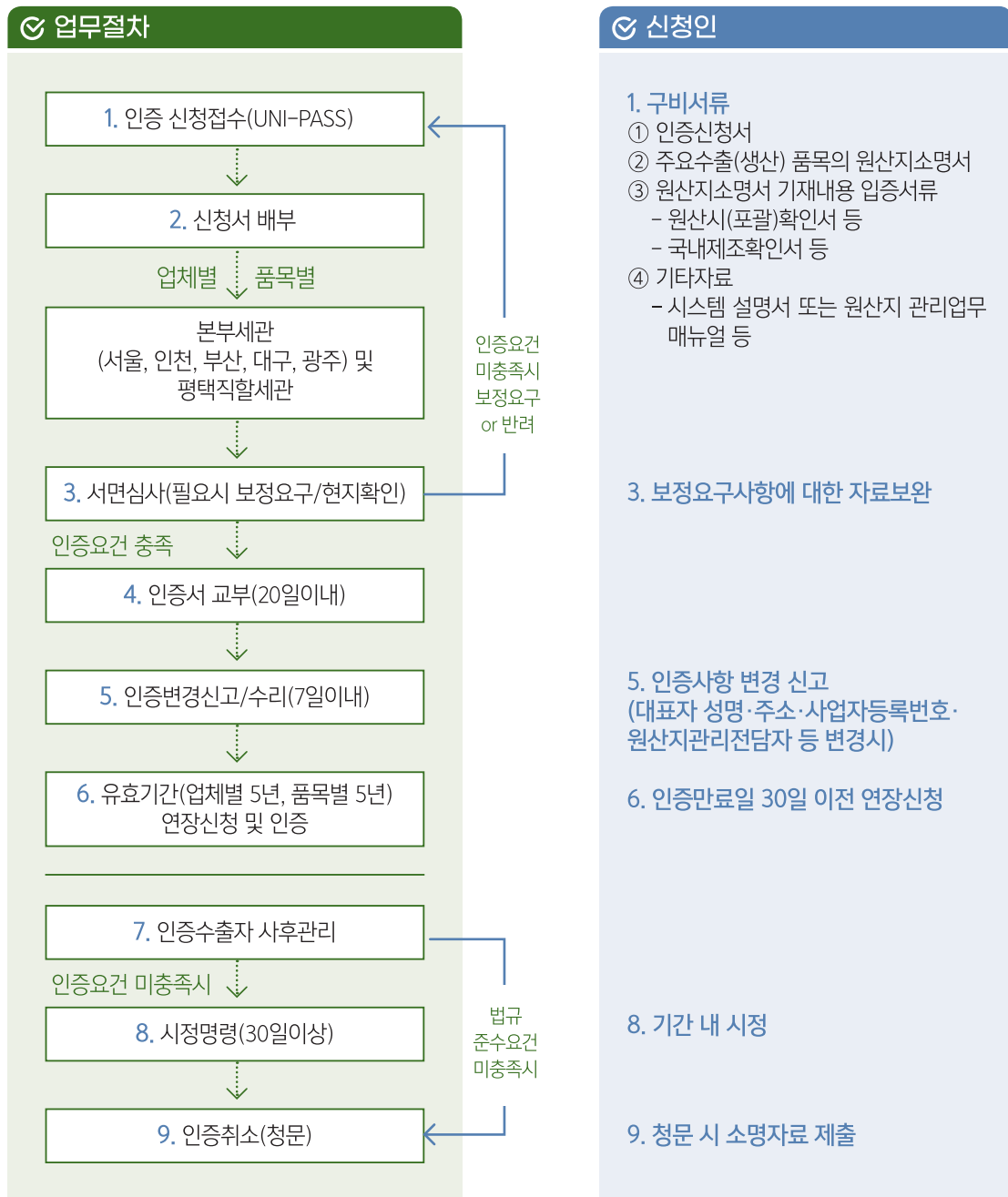
6. 인증신청 시 제출서류

인증신청 시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구분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서류를 제출해야 함.

구분	업체별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	○	○
신청품목 원산지소명서	○	○
신청품목 원산지확인서(수출자 ≠ 생산자인 경우)	○	○
신청물품 설명서	○	○
제조공정도	○	○
원재료 원산지(포괄)확인서	○	○
원재료 국내제조확인서	○	○
서명카드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	○
(전산시스템 보유시)시스템 설명서 또는 사용자 매뉴얼	○	
(전산시스템 미보유시)원산지관리 업무 매뉴얼	○	

7. 인증수출자 관리업무 절차

아래 그림의 1~4까지는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과정이고 이후는 인증취득 후 사후관리 절차임.
인증취득 후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하여야 함.



요약정리(II. RCEP협정 활용절차)

1. 수출물품 HS CODE 확인

HS Code는 물품을 구분하는 숫자로 된 상품분류코드로 특혜세율과 원산지 기준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코드이며, ①직접 확인 ②관세사 자문 ③관세청 질의를 통해 확인하는 3가지 방법이 있음.

2. 관세혜택 확인

RCEP협정 관세율은 원산지 물품에 적용되는 특혜관세이며, 물품에 따라 즉시 또는 점진적 철폐, 관세율 유지, 양허제외 되어있고 ①협정문에서 확인 ②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③TradeNAVI에서 확인 ④협정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4가지 방법이 있음.

3.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가 결정되며 세번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공정 기준 등이 있고, ①협정문에서 확인 ②FTA관세법 시행규칙에서 확인 ③YesFTA에서 확인하는 3가지 방법이 있음.

주요 원산지 결정기준	세번변경 기준	비원산지재료의 HS와 제품의 HS가 다르면 원산지로 인정
	부가가치 기준	일정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면 원산지로 인정
	가공공정 기준	특정한 가공공정을 수행하였으면 원산지로 인정

4. 원산지판정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판정은 1단계 BOM(Bill Of Material, 자재명세서)작성 후 완제품과 원재료에 대해 품목분류, 2단계 BOM상의 완제품 판매단가와 원재료 재료비 확인, 3단계 원재료에 대한 원산지 확인, 4단계 원산지 결정기준 적용의 순서로 원산지를 판정함.

5. 원산지증명서 발급

①기관발급 ②자율발급(인증수출자인 경우) 2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수출자가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6. 원산지서류 보관 및 검증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는 원산지증명이 발급된 경우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함.

7. 인증수출자 활용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RCEP협정의 경우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인증 수출자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Ⅲ

RCEP협정 활용전략

1. 우선순위 협정 활용전략
2. 인증수출자 취득 및 누적기준 활용전략
3. 對일본 활용전략

1 우선순위 협정 활용전략

1. RCEP협정 - 발효된 FTA 간 활용 우선순위

중국, 베트남 등 복수의 협정이 발효 중인 국가의 경우, 협정 간 특혜세율 및 원산지기준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협정을 활용함.

☑ RCEP협정국과의 FTA 체결현황

회원국 (총 15개국)	RCEP	한-중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싱가폴	한-호주	한-뉴질랜드
중국	○	○					
일본	○						
베트남	○		○	○			
태국	○		○				
싱가포르	○		○		○		
필리핀	○		○				
미얀마	○		○				
말레이시아	○		○				
라오스	○		○				
인도네시아	○		○				
캄보디아	○		○				
브루나이	○		○				
호주	○					○	
뉴질랜드	○						○

※ 한-인도네시아 CEPA('20.12.18 정식서명), 한-캄보디아('21.2.3 타결), 그 외 한-중·일, 한-필리핀, 한-말레이시아,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협정은 협상 중

2. 협정세율 비교

RCEP협정의 양허세율이 타 협정과 비교하여 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면 우선 활용함.
(자세한 사항은 별첨 1 참조)

1) RCEP협정 vs 한-중국FTA

수출국가		중국				
품목(HS)		김 (1212.21)	생선소시지 (1604.20)	대구 (0303.63)	삼치 (0305.59)	포도 (0806.10)
관세 실익	한-중국	4.5%	3.6%	3%	5.3%	4%
	RCEP	0% (10년간 철폐)	0% (10년간 철폐)	0% (10년간 철폐)	0% (15년간 철폐)	0% (10년간 철폐)

2) RCEP협정 vs 한-아세안FTA

수출국가		라오스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품목(HS)		홍차잎 (0902.40)	유자차 (2008.30)	단감 (0810.70)	고추장 (2103.90)	고춧가루 (0904.22)
관세 실익	한-아세안	40%	10%	10%	7%	15%
	RCEP	0% (즉시 철폐)	0% (즉시 철폐)	0% (즉시 철폐)	0% (즉시 철폐)	0% (15년간 철폐)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전략 수립

협정 간 양허세율은 동일하나, RCEP협정의 원산지 기준이 타 협정보다 충족에 유리한 경우 우선 활용함.

1) 원산지결정기준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각 협정 별로 주어진 기준으로, 수출제품이 원산지물품(한국산, KR)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판정하는 기준임.

- (1) 세번변경기준 : 자재명세서 상의 비원산지원재료들의 HS코드와 완제품의 HS코드를 비교하여 상이하면 원산지(KR)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CC),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 있음.
- (2) 부가가치기준 : 물품제조 시 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역내에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면 원산지(KR)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직접법(BU), 공제법(BD), MC법이 있음.



2) 적용예시

(1) 발포성 포도주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발포성 포도주 / 제2204.10호
수출국가	베트남
원산지 결정기준	한-베트남 : 4단위 세번변경기준 RCEP : 6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신선포도	0806.10	한국	45%	A사
2	효모	2102.10	미상	5%	B사
3	백포도주	2204.20	미상	37%	C사
4	탄산나트륨	2836.30	미상	3%	D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베트남 FTA	50%	4단위 세번이 동일한 원산지 '미상' 백포도주 사용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50%	6단위 세번이 변경된 백포도주 사용 → 원산지 충족 (2204.20호→2204.10호)

4. 시사점

베트남은 한-베트남FTA와 RCEP협정 모두 활용이 가능하며, 두 협정의 세율이 동일하나 원산지결정기준이 다를 경우, 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한 협정 또는 보다 충족이 용이한 협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 수립이 가능.

(2) 참기름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참기름 / 제1515.50호
수출국가	미얀마(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단, 제12류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참깨	1207.40	미상	80%	A사
2	병	7010.90	미상	10%	B사
3	마개	3923.50	미상	10%	C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아세안FTA	1.5%	제12류 원재료인 참깨(1207.40)가 비역내산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12년 철폐)	2단위 세번이 변경된 참깨 사용 → 원산지 충족 (12류→15류)

4. 시사점

※ 참기름을 미얀마로 수출할 경우 한-아세안FTA와 RCEP협정 모두 활용 가능

- ① 한-아세안FTA 1.5%, RCEP협정 0%(12년 후)로 장기적 측면에서 RCEP협정 적용 시 세율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② 한-아세안FTA는 “제12류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라는 예외기준 때문에 불충족이 되지만, RCEP협정에서는 예외기준 없어 12류 원재료인 참깨를 수입산을 사용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

(2) 삼계탕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삼계탕 / 제1602.32호
수출국가	캄보디아(아세안)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 부가가치기준 60% (단, 제1류, 제2류, 제5류 역내산 재료)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닭	0105.94	미상	70%	A사
2	정제수	2201.90	미상	10%	B사
3	찹쌀	1006.30	미상	15%	C사
4	간양파	0703.10	미상	3%	D사
5	간마늘	0703.20	미상	2%	E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아세안FTA	0%	1. 제1류 원재료인 닭(0105.94)이 비역내산 2. 원재료 거래처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지 않아 부가가치기준 판정 불가능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투입 원재료 모두 2단위 세번이 변경됨 → 원산지 충족 (01류→16류)

4. 시사점

※ 삼계탕을 캄보디아로 수출할 경우 한-아세안FTA와 RCEP협정 모두 활용 가능

- ① 한-아세안FTA, RCEP협정의 협정세율 모두 0%로 관세 실익이 동일
- ② RCEP협정은 단순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적용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만 한-아세안FTA는 보다 복잡한 부가가치기준 60%+예외기준(제1류, 제2류, 제5류 원재료는 역내산 재료) 적용으로 불충족이 되며, 충족을 위해서는 원재료 거래처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가 필요함.

(4) 흑미가루 피자용 도우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흑미가루 피자용 도우 / 제1905.90호
수출국가	베트남
원산지 결정기준	한-베트남 : 2단위 세번변경기준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밀가루	1101.00	한국	43%	A사
2	식물성 쇼트닝	1517.90	미상	5%	B사
3	소금	2501.00	미상	27%	C사
4	베이킹파우더	2102.30	미상	3%	D사
5	베이커리용흑미가루	1901.20	미상	2%	E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베트남FTA	0%	2단위 세번이 동일한 원산지 '미상' 베이커리용 흑미가루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10년 철폐)	4단위 세번이 변경된 '베이커리용 흑미가루' 사용 → 원산지 충족 (1901호→1905호)

4. 시사점

※ 흑미가루 피자용 도우를 베트남 수출 시, 한-베트남FTA와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한-베트남FTA에서 '베이커리용 흑미가루'는 비역내산 원재료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 하지만, RCEP협정에서는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함.
- ② 한-베트남FTA 세율, RCEP협정 철폐완료 세율 모두 0% 이므로 두 협정 모두 협정관세 0%이므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보다 유리한 RCEP협정을 우선 활용함.

(5) 오렌지향 초콜릿꿀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오렌지향 초콜릿꿀 / 제1806.90호
수출국가	중국
원산지 결정기준	한-중국 : 2단위 세번변경기준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벌꿀	1702.90	한국	85.4%	A사
2	코코아 가루	1805.00	미상	7.3%	B사
3	오렌지향(액상)	2008.99	미상	0.37%	C사
4	물	2201.10	미상	6.93%	D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중국FTA	4.2%	2단위 세번이 동일한 원산지 '미상' 코코아 가루 사용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15년 간 철폐)	4단위 세번이 변경된 '코코아가루' 사용 → 원산지 충족 (1805호→1806호)

4. 시사점

※ 초콜릿을 가미한 꿀을 중국 수출 시, 한-중FTA와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한-중FTA 4.2%, RCEP협정 0%(15년후)로 장기적 측면에서 RCEP협정 적용 시 세율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② 한-중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불충족이지만, RCEP협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원산지 충족하기 때문에 원산지결정기준이 보다 용이한 RCEP협정을 우선 활용.

2

인증수출자 취득 및 누적기준 활용전략

1. 인증수출자 취득

1) 인증수출자란

관세청에서 원산지관리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증해 주는 제도로써,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등 두 가지가 있음.

2) 활용전략

既 발효된 한-중FTA, 한-아세안FTA, 한-베트남FTA, 한-싱가포르FTA는 기관발급방식(관세청·대한상공회의소)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지만, RCEP협정의 경우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관세청) 취득 시 자율 원산지증명서로 발급 가능함.

2. 누적기준 활용

1) 누적기준이란

물품의 원산지 판정 시 체약상대국에서 발행한 생산요소(재료·제조공정)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협정 상대국의 원산지 재료도 우리나라 원산지 재료로 인정되므로 원산지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산 재료의 사용 및 역내 가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음.

2) 활용전략

- (1) RCEP협정의 역내국 원료로 제조한 가공식품이 역내국 수출경쟁력 확보
- (2) 재료 누적을 위한 수입원재료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 방식으로 더 용이하게 수취 가능

3) 적용예시

(1) 고추장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고추장 / 제2103.90호
수출국가	호주
원산지 결정기준	한-호주 : 6단위 세번변경기준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혼합양념	2103.90	중국	70%	B사
2	간장	2103.10	한국	10%	C사
3	정제수	2201.10	미상	10%	D사
4	주정	2207.10	미상	8%	F사
5	소금	2501.00	미상	2%	G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호주FTA	0%	6단위 세번이 동일한 중국산 혼합양념 사용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RCEP협정 회원국인 중국산 혼합양념(2103.90)은 역내산 재료로 간주 → 원산지 충족

4. 시사점

※ 고추장을 호주 수출 시, 한-호주FTA와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한-호주FTA, RCEP협정의 협정세율 모두 0%로 관세실익이 동일
- ② 한-호주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불충족이며, RCEP협정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불충족이지만 누적기준 활용으로 혼합양념이 역내산 재료로 간주 받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함. 따라서 RCEP협정을 우선 활용함.

(2) 동물용 사료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동물용 사료 / 제2309.10호
수출국가	일본
원산지 결정기준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쌀	1006.30	한국	55%	A사
2	완두단백	2106.10	미상	10%	B사
3	인산칼슘	2835.26	미상	5%	C사
4	프리믹스	2309.90	중국	15%	D사
5	연어 어분	0305.10	미상	5%	E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없음	8% (기본세율)	없음
RCEP협정	0%	RCEP협정 회원국인 중국산 프리믹스(2309.90)는 역내산 재료를 간주 → 원산지 충족

4. 시사점

※ 동물용 사료를 일본 수출 시,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RCEP협정 0%(15년 후)로 장기적 측면에서 세율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음.
- ② RCEP협정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불충족이지만, 누적기준 활용으로 프리믹스가 역내산 재료를 간주 받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하므로 RCEP협정 활용 가능함.

(3) 만두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만두 / 제1902.20호
수출국가	필리핀
원산지 결정기준	한-아세안 : 4단위 세번변경기준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밀가루	1101.00	미상	60%	A사
2	두부	2106.10	미상	10%	B사
3	당면	1902.19	중국	20%	C사
4	부추	0703.90	미상	8%	D사
5	양조간장	2103.10	미상	2%	E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아세안FTA	0%	4단위 세번이 동일한 중국산 당면 사용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RCEP협정 회원국인 중국산 당면(1902.19)은 역내산 재료로 간주 → 원산지 충족

4. 시사점

※ 만두를 필리핀 수출 시, 한-아세안FTA와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한-아세안FTA, RCEP협정의 협정세율 모두 0%로 관세실익이 동일
- ② 한-아세안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불충족이며, RCEP협정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불충족이지만, 누적기준 활용으로 당면이 역내산 재료로 간주받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함. 따라서 RCEP협정을 우선 활용.

(4) 간장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간장 / 제2103.10호
수출국가	라오스
원산지 결정기준	한-호주 : 4단위 세번변경기준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아미노산원액	2106.10	미상	20%	A사
2	정제염	2501.00	미상	10%	B사
3	양조간장원액	2103.10	중국	20%	C사
4	물엿	1702.90	미상	10%	D사
5	정제수	2201.90	미상	40%	E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아세안FTA	0%	4단위 세번이 동일한 중국산 양조간장원액 사용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15년간 철폐)	RCEP협정 회원국인 중국산 양조간장원액(2103.10)은 역내산 재료로 간주 → 원산지 충족

4. 시사점

※ 간장을 라오스 수출 시, 한-아세안FTA와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한-아세안FTA, RCEP협정의 협정세율 모두 0%로 관세실익이 동일
- ② 한-아세안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불충족이며, RCEP협정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불충족이지만, 누적기준 활용으로 양조간장원액이 역내산 재료로 간주받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함.
- ③ RCEP협정 0%(15년 후)로 장기적 측면에서 RCEP협정을 우선 활용함.

(5) 커피믹스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커피믹스 / 제2101.12호
수출국가	뉴질랜드
원산지 결정기준	한-뉴질랜드 : 4단위 세번변경기준 RCEP : 2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저감미당	1702.30	미상	40%	A사
2	유당	1702.11	미상	30%	B사
3	인스턴트 커피	2101.12	베트남	20%	C사
4	제이인산나트륨	2835.22	미상	9%	D사
5	헤이즐넛향	3302.10	미상	1%	E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한-뉴질랜드FTA	0%	4단위 세번이 동일한 베트남산 인스턴트 커피 사용 → 원산지 불충족
RCEP협정	0%	RCEP협정 회원국인 베트남산 인스턴트 커피 (2101.12)은 역내산 재료로 간주 → 원산지 충족

4. 시사점

※ 커피믹스를 뉴질랜드 수출 시, 한-뉴질랜드FTA와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한-뉴질랜드FTA, RCEP협정의 협정세율 모두 0%로 관세실익이 동일
- ② 한-뉴질랜드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은 6단위 세번변경기준으로 불충족이며, RCEP협정 또한 2단위 세번변경기준이 불충족이지만, 누적기준 활용으로 인스턴트 커피가 역내산 재료로 간주받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함. 따라서 RCEP협정을 우선 활용함.

3 對일본 수출 활용전략

1. 對일본 수출실적 상위품목(2020년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

순위	품명	HS코드	수출액(달러)
1	기타 조제품	210690	97,918,237
2	파프리카, 피망	070960	86,211,168
3	김치	200599	71,099,143
4	설탕 과자류	170490	67,146,425
5	라면	190230	54,545,008
6	소주	220890	40,642,792
7	식초*	220900	38,592,317
8	막걸리(국물발효주)*	220600	35,041,187
9	코코아 가루	180610	32,195,686
10	주정(기타변성않는 에틸알콜)	220710	23,556,675

출처 : KATI 농식품수출정보

*활용예시 참고(식초 : p66, 막걸리 : p67)

2. 활용전략

- 1) RCEP협정 참여국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과 양자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서 한-일본FTA 체결효과를 누릴 수 있음.
- 2) 농수산물품 대상으로 對일본 수출 시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할 예정.

수출국가		일본				
품목(HS)		소주 (2208.90.123)	막걸리 (2206.00.229)	청주 (2206.00.210)	배 (0808.30.000)	송이버섯 (0709.51.000)
관세 실익	실행 세율	82.5엔/ℓ	42.4엔/ℓ	70.4엔/ℓ	4.8%	3%
	RCEP협정	0엔/ℓ (10년간 철폐)	0엔/ℓ (20년간 철폐)	0엔/ℓ (15년간 철폐)	0% (10년간 철폐)	0% (10년간 철폐)

3. 활용사례

1) 식초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식초 / 제2209.00호
수출국가	일본
원산지 결정기준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사과농축액	2009.79	미상	65%	A사
2	누룩	2102.20	미상	10%	B사
3	효모	2102.10	미상	5%	C사
4	스테비오사이드	0806.10	미상	10%	D사
5	제2인산암모늄	2918.14	미상	10%	E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없음	7.5% (기본세율)	없음
RCEP협정	0% (10년간 철폐)	4단위 세번이 동일한 원재료 없음 → 원산지 충족

4. 시사점

※ 식초를 일본 수출 시,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모든 원재료가 4단위 세번변경이 이뤄지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과 상관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여 RCEP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
- ② RCEP협정 활용 시, 2020년 對일본 식초 수출액 기준 약 32.7억원 관세 절감이 가능함.

2) 막걸리(곡물발효주)

1. 품목정보

품명 / HS코드	막걸리 / 제2206.00호
수출국가	일본
원산지 결정기준	RCEP : 4단위 세번변경기준



2.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NO.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비율	구매처
1	쌀	1006.30	미상	65%	A사
2	물	2201.90	한국	20%	B사
3	효모	2102.10	미상	5%	C사
4	유리병	7010.90	미상	10%	D사

3.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검토

활용협정	협정세율	원산지 판정
없음	42.40 yen/liter (기본세율)	없음
RCEP협정	0% (15년간 철폐)	4단위 세번이 동일한 원재료 없음 → 원산지 충족

4. 시사점

※ 막걸리를 일본 수출 시, RCEP협정 활용 가능

- ① 모든 원재료가 4단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가격과 상관없이 원산지결정기준이 충족하여 RCEP협정을 활용할 수 있음.
- ② RCEP협정 활용 시 15년 후 협정관세가 0%가 되며, 2020년 수출액 기준으로 약 230.7억원 관세 절감이 가능함.

참고문헌

- ◎ 농식품부, 보도자료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0.11.15.
- ◎ 아주경제 원승일, [RCEP, 국산 농수산 영향]② 일본과 신규 FTA 효과…"민감품목 제외, 시장 영향 미미", 2020-11-17.
- ◎ 아주경제 원승일, [RCEP, 국산 농수산 영향]① 쌀·오징어 등 민간품목, 추가 개방 막았다, 2020.11.17.
- ◎ 국제원산지정보원, '신규 협정 체결국 통관·통상환경 및 FTA 활용방안_일본편'.2020.
- ◎ ASEAN VIETNAM INFORMATION PORTAL, “Thailand works for early parliament ratification of RCEP”, 2020.11.18.
- ◎ People's Army Newspaper, “Singapore will soon ratify RCEP agreement: Minister”, 2020.11.15.
- ◎ Australian Government,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최종 검색일 : 2021.03.29.), <<https://www.dfat.gov.au/trade/agreements/not-yet-in-force/rcep>>.
- ◎ NARS 정민정, 김예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특징과 향후 과제”, 2020.12.31.
- ◎ KI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12.11.
- ◎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김민성, 「FTA 무역리포트, 2020.4, vol.1」 중 RCEP의 주요 합의 내용과 기대효과, 2020.
- ◎ 오수현, 라미령,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0.
- ◎ 국회입법조사처 정민정, 김예경,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주요 특징과 향후과제」, 2020.
- ◎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2020 농식품 수출환경 변화대응 이슈조사 시장편」, 2020.
- ◎ KIEP 김민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TO 무역원활화협정의 이행 현황과 시사점」, 2018.
- ◎ 법제처, 법령정보관리원, 「WTO무역원활화협정의 성공적 이행요소」, 2015.
- ◎ Kotra 고일훈, “WTO 무역원활화협정 주요내용 및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4-051, 2014.12.12.
- ◎ 농축유통신문 유정호, 「전문가 기고 - RCEP 농업분야 협상결과를 다시 보다, 2020.12.03.
- ◎ 산업부, 보도자료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서명」, 2020.



IV 별첨

RCEP협정과 기존 FTA 협정의
협정세율 비교

유의사항

1. 수입국 HS코드의 적합성 판단에 있어 품목에 대한 한정적인 정보, 상대 관세 당국의 품목분류 상이 가능성이 있어 실제와 다소 상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수입자를 통한 HS코드 및 수입세율의 사전확인이 필요함.
2. 품명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분류 가능한 HS코드 중 가장 마지막 호(4단위)에 분류함.
3. RCEP협정 세율의 경우 '1년차 세율(발효연도 1년차에 적용되는 세율)', '완료세율(철폐스케줄 완성 연도에 적용되는 세율)', '완료연차(철폐스케줄)로 항목 구분함.
4. FTA 세율 및 실행세율 대비 RCEP협정 관세율이 낮은 경우 노란색으로 음영 표시함.
5. 상호대응세율*적용 품목의 경우 초록색으로 음영 표시함.
*상호대응 세율이란 FTA 체약상대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할 경우,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 철폐를 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6. 싱가포르의 경우 RCEP협정 부속서(1)에서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기존 FTA(한-싱가포르)에서도 동일하게 모든 농식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있는바, RCEP협정 발효에 따른 추가 실익이 없어 조사에서 제외하였음.

중국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중국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9.7%	양허제외		
2	2008995010	김(Laver)	9.7%	양허제외		
3	1212211010	김(건조한 것)(식용의 것)	4.5%	13.5%	0%	10년
4	1211201391	홍삼(기타/본삼)	20%	양허제외		
5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18.4%	20%	16%	35년
6	1701990000	자당(고체의 것/향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50%	양허제외		
7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22.7%	양허제외		
8	2202991000	인삼음료	22.7%	양허제외		
9	1901101010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15%	양허제외		
10	1604204010	생선묵(게맛의 것)	3.6%	10.8%	0%	10년
11	1604203000	생선 소시지	3.6%	10.8%	0%	10년
12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냉동)	3%	9%	0%	10년
13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비니토우(냉동)	7.8%	양허제외		
14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9%	양허제외		
15	2009901090	기타과실주스 주기제것(혼합)	10.6%	18.7%	0%	15년
16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22.7%	양허제외		
17	0303591000	삼치(스콰버모로르스종/냉동)	5.3%	9.3%	0%	15년
18	2203000000	맥주	0%	0%	0%	즉시철폐
19	1904109000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16.2%	양허제외		
20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13%	양허제외		
21	2402201000	필터담배	25%	양허제외		
22	1704902090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7%	양허제외		
23	0401200000	우유(지방 1~6%)	15%	양허제외		
24	2008301000	유자(기타방법 조제)	13%	양허제외		
25	1209919000	채소 종자	0%	0%	0%	즉시철폐
26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3%	양허제외		
27	0308120000	해삼(냉동)	3.0%	9%	0.0%	10년
28	2208904000	소주	6.5%	양허제외		
29	2103901030	고추장	13.6%	양허제외		
30	0303540000	고등어(냉동)	3.0%	9%	0%	10년
31	0307432090	오징어 기타(냉동)	7.8%	11.4%	0%	20년
32	0806100000	포도(산선)	4%	11.7%	0%	10년
33	0802410000	밤(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16%	양허제외		
34	0303912090	어란(냉동)	3%	9%	0%	10년

일본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실행세율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0304879000	다랑어 기타(냉동한 피레트)	3.5%	양허제외		
2	2402201000	필터담배	8.5% + 290.70 yen/1,000 pieces	양허제외		
3	2008995010	김(Laver)	12%	10.90%	0%	10년
4	1212211010	김(건조한 것)(식용의 것)	40%	양허제외		
5	2403191000	파이프 담배	29.8%	양허제외		
6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에한한다)	3%	양허제외		
7	2005991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9%	양허제외		
8	1902301010	라면	21.3%	양허제외		
9	2209001000	양조식초	7.5%	6.80%	0%	10년
10	0307810000	전복(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7%	양허제외		
11	2208904000	소주	82.5 yen/l	75yen/l	0%	10년
12	2106903029	기타 인삼제품류	12%	양허제외		
13	2206002090	국물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이외 기타)	42.4 yen/l	40.38yen/l	0%	20년
14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및 감미료 첨가)	29.8	양허제외		
15	0307120000	냉동한 것(굴)	7%	양허제외		
16	0301995000	붕장어(conger eel/활어)	3.5%	양허제외		
17	0307714000	바지락(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7%	양허제외		
18	2207109090	기타변성않는 에틸알콜	0%	양허제외		
19	2402103000	소형 엽결련	8.5% + 290.70 yen/1,000 pieces	양허제외		
20	1212212010	미역(건조한 것)(식용의 것)	1.28 yen/piece	양허제외		
21	0301998000	넙치(flat fish/활어)	3.5%	양허제외		
22	1901209000	기타(쌀가루, 보릿가루 이외 기타/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16%	양허제외		
23	1605101091	붉은대게살(조제 및 보존처리)	9.6%	양허제외		
24	1212213010	투스(건조한 것)(식용의 것)	10.5%	양허제외		
25	0303550000	전갱이(냉동)(트라커커스종)	10%	양허제외		
26	0404902000	유장(기타/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29.8% + 679 yen/kg	양허제외		
27	2304000000	대두 오일케이크	0%	0%	0%	즉시철폐
28	0702000000	토마토	3%	양허제외		
29	0302899090	기타(신선 · 냉장/그 밖의 어류/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은 제외)	3.5%	양허제외		
30	1302319000	한천(기타)	112 yen/kg	양허제외		
31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9.6%	양허제외		

호주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호주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0%	0%	0%	즉시철폐
2	2008995010	김(Laver)	0%	0%	0%	즉시철폐
3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	0%	0%	즉시철폐
4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0%	0%	즉시철폐
5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0%	5%	0%	20년
6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0%	0%	즉시철폐
7	2005991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0%	4%	0%	15년
8	1904101000	콘 플레이크	0%	0%	0%	즉시철폐
9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1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신선,냉장)	0%	0%	0%	즉시철폐
11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0%	5%	0%	20년
12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및 감미료 첨가)	0%	0%	0%	즉시철폐
13	0709595000	팽이버섯(신선/냉장)	0%	0%	0%	즉시철폐
14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즉시철폐
15	1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16	1704902090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17	1902191000	국수(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것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18	2203000000	맥주	0%	0%	0%	즉시철폐
19	1901909099	조제식료품(기타)	0%	0%	0%	즉시철폐
20	2103901030	고추장	0%	0%	0%	즉시철폐
21	2103909010	마요네스	0%	0%	0%	즉시철폐
22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0%	0%	0%	즉시철폐
23	1901909091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0%	0%	0%	즉시철폐
24	1604204090	생선묵(게맛의 것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25	2202101000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0%	0%	0%	즉시철폐
26	2208904000	소주	0%	0%	0%	즉시철폐
27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0%	0%	0%	즉시철폐
28	1902309000	파스타(조제하지 않은 것, 속을 채운 것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29	1006301000	멥쌀(nonglutinous)	0%	0%	0%	즉시철폐
30	0904220000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	즉시철폐

뉴질랜드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뉴질랜드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0%	4.7%	0%	15년
2	3503001010	젤라틴	0%	5%	5%	-
3	2008995010	김(Laver)	0%	0%	0%	즉시철폐
4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4.7%	0%	15년
5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0%	4.7%	0%	15년
6	0307120000	냉동한 것(굴)	0%	0%	0%	즉시철폐
7	2005991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0%	5%	5%	-
8	1904101000	콘 플레이크	0%	0%	0%	즉시철폐
9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래커	0%	4.7%	0%	15년
10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0%	4.7%	0%	15년
11	210500109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한 것)	0%	4.5%	0%	10년
12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4.5%	0%	10년
13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0%	4.5%	0%	10년
14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	4.7%	0%	15년
15	2208904000	소주	0%	0%	0%	즉시철폐
16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4.7%	0%	15년
17	0806100000	포도(신선)	0%	0%	0%	즉시철폐
18	2103901030	고추장	0%	4.5%	0%	10년
19	2101129010	밀크대용물함유조제품	0%	5%	0%	20년
20	2103909010	마요네스	0%	4.5%	0%	10년
21	1902191000	국수(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것 이외 기타)	0%	4.5%	0%	10년
22	2103100000	간장(soya sauce)	0%	5%	2.5%	10년
23	2202101000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0%	0%	0%	즉시철폐
24	1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0%	4.5%	0%	10년
25	2106909010	커피크리머	0%	4.7%	0%	15년
26	1901909091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0%	0%	0%	즉시철폐
27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0%	4.7%	0%	15년
28	1604204090	생선묵(게맛의 것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29	1902309000	파스타(조제하지 않은 것, 속을 채운 것 이외 기타)	0%	4.5%	0%	10년
30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0%	0%	0%	즉시철폐

베트남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020712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5%	40%	40%	30%	25년
2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냉동)	0%	0%	0%	0%	즉시철폐
3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냉동)	0%	0%	0%	0%	즉시철폐
4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 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0%	27%	0%	10년
5	2402201000	필터담배	100%	135%	양허제외		
6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0%	15%	16.2%	0%	10년
7	1702602000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	0%	0%	0%	0%	즉시철폐
8	1901101010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0%	10%	9%	0%	10년
9	1902301010	라면	0%	0%	27%	0%	10년
10	0303912010	명란(냉동)	0%	0%	0%	0%	즉시철폐
11	2008995010	김(Laver)	0%	30%	30%	15%	20년
12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0%	36%	0%	10년
13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 (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0%	0%	40%	30%	25년
14	0808300000	배(신선)	0%	10%	0%	0%	즉시철폐
15	0806100000	포도(신선)	0%	10%	0%	0%	즉시철폐
16	0303591000	삼치(스콰머모러스종/냉동)	0%	0%	9%	0%	10년
17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0%	0%	0%	0%	즉시철폐
18	1704902090	캔디류(드롭프스, 캐러멜 이외 기타)	0%	0%	13.5%	0%	10년
19	0210991010	쇠고기 가루	0%	0%	18%	0%	10년
20	0210991030	가금류 가루	0%	0%	18%	0%	10년
21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0%	0%	13.5%	0%	10년
22	0305593000	명태(건조/염장불문/훈제제외)	0%	20%	0%	0%	즉시철폐
23	0307810000	전복(산 것 ·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	0%	0%	0%	즉시철폐
24	0301998000	넙치(flat fish/활어)	0%	0%	0%	0%	즉시철폐
25	3503001010	젤라틴	0%	0%	0%	0%	즉시철폐
26	2208904000	소주	48%	50%	45%	45%	-
27	210500109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한 것)	0%	0%	18%	0%	10년
28	1905901010	빵	0%	0%	18%	0%	10년
29	1517902000	쇼트닝	0%	0%	22.5%	0%	10년
30	0301999040	볼락(활어)	0%	0%	0%	0%	즉시철폐
31	2303100000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0%	0%	0%	0%	즉시철폐
32	1904109000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0%	0%	13.5%	0%	10년

말레이시아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0%	0%	0%	즉시철폐
2	2106909099	조제품 기타	양허제외			
3	1108121000	옥수수전분(식품용)	0%	0%	0%	즉시철폐
4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0%	0%	즉시철폐
5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0%	0%	0%	즉시철폐
6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0%	0%	0%	즉시철폐
7	151800909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기타)	0%	0%	0%	즉시철폐
8	0810701000	단감(신선)	0%	30%	30%	없음
9	2008995010	김(Laver)	0%	0%	0%	즉시철폐
10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양허제외			
11	2005991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0%	0%	0%	즉시철폐
12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레커, 쌀과자 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13	1806909090	코코아 조제품(초코렛 및 초코렛 과자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14	1602491000	돼지고기(기타/혼합물 포함/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즉시철폐
15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18%	0%	10년
16	1901909091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0%	6%	3%	23년
17	1701990000	자당(고체의 것/항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0%	0%	0%	즉시철폐
18	2208904000	소주	양허제외			
19	1605519000	굴(조제 또는 저장처리)(기타)	0%	0%	0%	즉시철폐
20	2103901030	고추장	0%	0%	0%	즉시철폐
21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22	0303530000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 사르디노프스종 · 사르디넬라 · 브리스링이나 스프랫 ·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냉동)	0%	0%	0%	즉시철폐
23	1702302000	포도당 시럽(과당 함유량 20% 미만)	0%	0%	0%	즉시철폐
24	2101129010	밀크대용물함유조제품	0%	0%	0%	즉시철폐
25	2103909030	혼합조미료	0%	0%	0%	즉시철폐
26	0709594010	큰나타리버섯(신선,냉장)	0%	0%	0%	즉시철폐
27	2106901020	과실향의 음료베이스	0%	0%	0%	즉시철폐
28	1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29	2103901090	장류(된장, 춘장, 고추장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30	1902309000	파스타(조제하지 않은 것, 속을 채운 것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미얀마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15%	15%	15%	-
2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	15%	15%	-
3	2106909010	커피크리머	0%	15%	15%	-
4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0%	15%	15%	-
5	2008995010	김(Laver)	0%	15%	15%	-
6	1602329000	닭고기(기타조제품저장)	0%	15%	15%	-
7	1602509000	쇠고기(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0%	15%	15%	-
8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0%	15%	15%	-
9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0%	15%	15%	-
10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10%	10%	-
11	1212212020	미역(염장한 것)(식용의 것)	0%	0%	0%	즉시철폐
12	2103901030	고추장	0%	15%	15%	-
13	2103100000	간장(soya sauce)	0%	15%	15%	-
14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0%	15%	15%	-
15	1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15%	15%	15%	-
16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15%	15%	-
17	0709595000	팽이버섯(신선/냉장)	0%	14%	0%	20년
18	1605219000	새우류(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0%	10%	10%	-
19	1901909091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0%	15%	15%	-
20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13%	0%	15년
21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40%	40%	40%	-
22	0406300000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 제외)	0%	3%	0%	13년
23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0%	15%	15%	-
24	2208904000	소주	미양허 (기본세율40%)	40%	40%	-
25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0%	10%	10%	-
26	1704100000	추잉검(당으로 도포하였는지의 여부 불문)	0%	20%	20%	-
27	2005991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15%	15%	15%	-
28	2209001000	양조식초	0%	15%	15%	-
29	1212212010	미역(건조한 것)(식용의 것)	0%	0%	0%	즉시철폐
30	1605542099	오징어 기타(조제 또는 저장처리)	0%	10%	10%	-

캄보디아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2202109000	물(광천수, 탄산수 포함/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	0%	양허제외		
2	1902301010	라면	15%	양허제외		
3	1901101010	조제분유(유아용/소매용)	0%	양허제외		
4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	양허제외		
5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양허제외		
6	2208709000	기타리큐르 및 코디얼	5%	15%	0%	15년
7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20%	양허제외		
8	2005999000	채소류 조제품(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제2006호의 물품 제외)	0%	35%	35%	-
9	2208904000	소주	15%	양허제외		
10	2103901030	고추장	20%	양허제외		
11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	0%	35%	0%	13년
12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7%	양허제외		
13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5%	7%	7%	-
14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설탕, 감미료, 향미 무첨가)	35%	35%	35%	-
15	2008995010	김(Laver)	5%	35%	35%	-
16	210500109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한 것)	0%	35%	0%	15년
17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15%	0%	15년
18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7%	7%	7%	-
19	0904220000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15%	15%	0%	15년
20	2202991000	인삼음료	0%	양허제외		
21	2208909000	주류(기타/증류주 · 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	15%	양허제외		
22	2005991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0%	35%	35%	-
23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0%	7%	0%	15년
24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양허제외		
25	1901909099	조제식료품(기타)	0%	15%	15%	-
26	1601001000	소시지	35%	35%	35%	-
27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0%	7%	0%	20년
28	2008199000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0%	35%	0%	20년
29	0901110000	커피(볶지 않은 것/카페인 제거 않은 것)	0%	15%	15%	-
30	1602491000	돼지고기(기타/혼합물 포함/밀폐용기에 넣은 것)	0%	35%	0%	15년

※ 상호대응세율은 참고사항이며 현지 직접 확인 필요

(캄보디아 수입 관세율 조회 사이트 : <http://www.customs.gov.kh> 에서 상호대응세율은 별도 조회 안됨)

인도네시아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0%	4.6%	0%	15년
2	1902301010	라면	0%	10%	0%	10년
3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5%	4.60%	0%	15년
4	2008995010	김(Laver)	5%	0%	0%	즉시철폐
5	1212211010	김(건조한 것)(식용의 것)	5%	0%	0%	즉시철폐
6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 · 가두스 오각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냉동)	5%	4.6%	0%	15년
7	1701990000	자당(고체의 것/항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Rp790/kg	40%	40%	-
8	2403199000	흡연용 담배(기타)	0%	10%	10%	-
9	1504200000	어류의 유지, 분획물(간유 제외)	0%	4.5%	0%	10년
10	2403919000	기타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0%	10%	10%	-
11	1001999090	밀(기타)	0%	0%	0%	즉시철폐
12	0305541000	멸치(엔그라울리스종/건조)	5%	0%	0%	즉시철폐
13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0%	0%	0%	즉시철폐
14	2208904000	소주	Rp790/kg	양허제외		
15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5%	4.5%	0%	10년
16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냉동)	5%	5%	0%	20년
17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투우(냉동)	5%	4.5%	0%	10년
18	1108121000	옥수수전분(식품용)	10%	10%	10%	-
19	0709595000	팽이버섯(신선/냉장)	0%	0%	0%	즉시철폐
20	2103901030	고추장	5%	4.5%	0%	20년
21	0302899090	기타(신선 · 냉장/그 밖의 어류/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은 제외)	5%	0%	0%	즉시철폐
22	1515290000	옥수수유(기타)	0%	0%	0%	즉시철폐
23	2401209000	잎담배(기타)	0%	4.6%	0%	15년
24	1212212020	미역(염장한 것)(식용의 것)	5%	0%	0%	즉시철폐
25	1209919000	기타 채소 종자	0%	0%	0%	즉시철폐
26	3504001010	펄톤	0%	0%	0%	즉시철폐
27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품	5%	0%	0%	즉시철폐
28	1702602000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	0%	0%	0%	즉시철폐
29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170%	양허제외		
30	2106903029	홍삼조제품(홍삼차 이외 기타)	5%	0%	0%	즉시철폐
31	1301909000	검(기타)	3%	0%	0%	즉시철폐
32	0808300000	배(신선)	5%	0%	0%	즉시철폐

※ 해당 국가의 상호대응세율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
(인도네시아 수입 관세율 조회 사이트 : <http://eservice.insw.go.id>)

필리핀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0%	0%	0%	즉시철폐
2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5% ¹⁾	0%	0%	즉시철폐
3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0%,5% ²⁾	0%	0%	즉시철폐
4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투(냉동)	5%	0%	0%	즉시철폐
5	2008995010	김(Laver)	10%	0%	0%	즉시철폐
6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7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즉시철폐
8	210500109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한 것)	0%	0%	0%	즉시철폐
9	2101111000	커피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5%	양허제외		
10	2008301000	유자(기타방법 조제)	10%	0%	0%	즉시철폐
11	2208904000	소주	5%	0%	0%	즉시철폐
12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5% ³⁾	0%	0%	즉시철폐
13	1904109000	곡류 조제품(팽창, 볶은 것/콘 플레이크, 콘 칩, 튀긴 쌀 이외 기타)	0%,5% ⁴⁾	0%	0%	즉시철폐
14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0%	0%	0%	즉시철폐
15	2103901030	고추장	0%,5% ⁵⁾	0%	0%	즉시철폐
16	2103901090	장류(된장, 춘장, 고추장 이외 기타)	7%	0%	0%	즉시철폐
17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 · 스콤버 자포니쿠스/냉동)	5%	5%	3%	20년
18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레커, 쌀과자 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19	1702602000	과당시럽(과당 함유량 50% 초과)	0%	0%	0%	즉시철폐
20	1702909000	전화당과 그 밖의 당류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 서 과당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 인조꿀, 캐러멜당, 맥아당 이외 기타)	3%	0%	0%	즉시철폐
21	040299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5%	0%	0%	즉시철폐
22	0810701000	단감(신선)	5%,10% ⁶⁾	0%	0%	즉시철폐
23	2008199000	건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0%	0%	0%	즉시철폐
24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냉동)	5%	0%	0%	즉시철폐
25	1701990000	자당(고체의 것/항미제 및 착색제 미첨가)	50%	양허제외		
26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	5%	30%	23%	20년
27	1604204090	생선묵(게맛의 것 이외 기타)	0%,5% ⁷⁾	0%	0%	즉시철폐
28	0304879000	다랑어 기타(냉동한 피레트)	0%	0%	0%	즉시철폐
29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0%,5% ³⁾	0%	0%	즉시철폐
30	0904220000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5%	20%	15%	20년

※ 해당 국가의 상호대응세율은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필리핀 수입 관세율 조회 사이트 : <http://finder.tariffcommission.gov.ph>)

※ 상호대응세율 적용 시 특정 품목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을 별도로 아래와 같이 정함.

참조번호	특정 품목 적용세율	기타	참조번호	특정 품목 적용세율	기타
1)	홍삼 제품, 버터를 베이스로 한 제품 : 5%	0%	5)	된장, 춘장, 고추장 : 5%	0%
2)	인삼 및 오가피 와인 : 0%	5%	6)	단감 : 10%	5%
3)	과일 주스 음료, 인삼을 원료로 한 음료 : 5%	0%	7)	피쉬 마리네이즈(생선 양념장) : 0%	5%
4)	콘플레이크, 콘칩, 빵튀기(부룬 쌀) : 0%	5%			

태국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0303430000	냉동 가다랑어	0%	0%	0%	즉시철폐
2	0303420000	냉동 황다랑어	0%	0%	0%	즉시철폐
3	0303440000	냉동 눈다랑어	0%	0%	0%	즉시철폐
4	2402201000	필터담배	0%	양허제외		
5	1212211010	식용 건조 김	0%	0%	0%	즉시철폐
6	2008995010	김	0%	28.5%	0%	20년
7	1902301010	라면	0%	0%	0%	즉시철폐
8	0810100000	초본류 딸기	5%	0%	0%	즉시철폐
9	2101111000	커피믹스	0%	양허제외		
10	0307432090	냉동 오징어	0%	0%	0%	즉시철폐
11	1001999090	밀	0%	0%	0%	즉시철폐
12	0303530000	냉동 정어리	0%	0%	0%	즉시철폐
13	0303190000	냉동 연어	0%	0%	0%	즉시철폐
14	1905901040	비스킷, 쿠키	5%	0%	0%	즉시철폐
15	2202999000	기타 음료	5%	양허제외		
16	3504001010	펩톤	0%	0%	0%	즉시철폐
17	2103901030	고추장	5%	0%	0%	즉시철폐
18	0307120000	냉동 굴	0%	0%	0%	즉시철폐
19	0806100000	신선 포도	0%	0%	0%	즉시철폐
20	2208709000	기타 리큐르류 및 코디얼	5%	57.0%	0%	20년
21	2005991000	냉장 김치	0%	27.0%	0%	10년
22	0302899090	기타 어류		양허제외		
23	2208904000	소주	5%	57%	0%	20년
24	2303200000	기타 설탕류	0%	0%	0%	즉시철폐
25	1209919000	기타 채소 종자	0%	0.9%	0%	10년
26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0%	9%	0%	10년
27	2403919000	기타 담배	0%	양허제외		
28	2105001090	코코아 함유 아이스크림	0%	28%	0%	15년
29	1904109000	곡류 조제품	5%	0%	0%	즉시철폐
30	2207109090	기타 변성 않는 에틸알콜	5%	0%	0%	즉시철폐
31	1902191000	국수	5%	0%	0%	즉시철폐
32	3503001010	젤라틴	0%	0%	0%	즉시철폐
33	0810701000	신선 단감	5%	0%	0%	즉시철폐

※ 해당 국가의 상호대응세율은 아래의 사이트를 통해 조회 가능
(태국 수입 관세율 조회 사이트 : <http://itd.customs.go.th>)

라오스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0%	9%	0%	15년
2	0206491000	돼지고기(식용설육/족/냉동)	0%	30%	30%	-
3	2208709000	기타리큐르류 및 코디얼	0%	40%	40%	-
4	2208904000	소주	40%	양허제외		
5	2008995010	김(Laver)	30%	30%	30%	-
6	1602509000	쇠고기(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 기타)	30%	30%	30%	-
7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0%	9%	0%	15년
8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0%	30%	30%	-
9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30%	30%	-
10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쌀과자 외 기타)	0%	30%	30%	-
11	0206499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냉동)	0%	30%	30%	-
12	2103901030	고추장	0%	9%	0%	15년
13	2208909000	주류(기타/증류주 · 리큐르와 그 밖의 주정음료/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	40%	양허제외		
14	1602329000	닭고기(기타조제저장)	30%	30%	30%	-
15	0902400000	홍차와 부분발효차(기타)	40%	양허제외		
16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	10	0%	13년
17	0406300000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 제외)	0%	10	0%	13년
18	0904220000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30%	30%	-
19	1605219000	새우류(기타/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0%	30%	30%	-
20	1601001000	소시지	0%	30%	0%	20년
21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9%	0%	15년
22	2103909030	혼합조미료	0%	9%	0%	15년
23	1604149000	기타(조제/다량어 · 가다량어 · 버니토(사르다종) 이외 기타)	0%	30%	0%	20년
24	1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10%	9%	0%	15년
25	0305593000	명태(건조/염장불문/훈제제외)	0%	9%	0%	15년
26	0202201000	쇠고기(냉동/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갈비)	30%	양허제외		
27	1605101091	붉은대게살(조제 및 보존처리)	0%	30%	30%	-
28	0301998000	넙치(flat fish/활어)	20%	20%	20%	-
29	2103201000	토마토케첩	0%	9%	0%	15년
30	2103100000	간장(soya sauce)	0%	9%	0%	15년

브루나이						
수출 순위	HS CODE	품명(대한민국)	한-아세안 FTA	RCEP협정		
				1년차 세율	완료 세율	완료 연차
1	1902301010	라면	0%	0%	0%	즉시철폐
2	2202999000	기타(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	0%	0%	0%	즉시철폐
3	2103909090	소스, 소스 제조용 조제품(마요네즈, 인스턴트 카레, 혼합조미료, 메주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4	1905901040	비스킷, 쿠키 및 크레커	0%	0%	0%	즉시철폐
5	1905901090	베이커리 제품(빵, 건빵, 파이와 케이크, 비스킷, 쿠키와 크레커, 쌀과자 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6	1901909091	조제식료품 기타(쌀가루의 것)	0%	0%	0%	즉시철폐
7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설탕, 감미료, 향미 무첨가)	0%	0%	0%	즉시철폐
8	2106909099	조제품 기타	0%	0%	0%	즉시철폐
9	2008995010	김(Laver)	0%	0%	0%	즉시철폐
10	1604141019	다량어(조제/밀폐용기에 넣은 것)	0%	0%	0%	즉시철폐
11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0%	0%	0%	즉시철폐
12	2105001090	아이스크림(코코아를 함유한 것)	0%	0%	0%	즉시철폐
13	2008199000	견과류 조제품(땅콩, 밤, 코코넛 이외 기타/조제 및 보존처리)	0%	0%	0%	즉시철폐
14	2202993000	식혜	0%	0%	0%	즉시철폐
15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	0%	0%	즉시철폐
16	2103901030	고추장	0%	0%	0%	즉시철폐
17	0904220000	고추류(파쇄 또는 분쇄한 것)	0%	0%	0%	즉시철폐
18	2005999000	채소류 조제품(냉동하지 않은 것/조제 및 보존처리/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 제외/제2006호의 물품 제외)	0%	0%	0%	즉시철폐
19	2101121000	인스턴트커피	0%	5%	0%	15년
20	0402999000	연유기타(설탕, 감미료 첨가)	0%	0%	0%	즉시철폐
21	1902192000	당면(조제하지 않은 파스타/조란을 넣은 것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22	2005991000	김치(냉동하지 않은 것)	0%	0%	0%	즉시철폐
23	1901909099	조제식료품(기타)	0%	0%	0%	즉시철폐
24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0%	0%	0%	즉시철폐
25	2202101000	물(설탕, 감미료, 향미 첨가/착색한 것)	0%	0%	0%	즉시철폐
26	2103901010	된장	0%	0%	0%	즉시철폐
27	1904901010	짜거나 삶은 쌀	0%	0%	0%	즉시철폐
28	1604209000	어류조제, 저장처리 제품(생선 페이스트, 마리네이드, 소시지, 생선묵, 게맛의 것 제외)	0%	0%	0%	즉시철폐
29	1902301090	인스턴트면 면류(라면 이외 기타)	0%	0%	0%	즉시철폐
30	2103100000	간장(soya sauce)	0%	0%	0%	즉시철폐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전략처

전 화 | 061-931-0871

팩 스 | 061-804-4538

Homepage | <http://www.at.or.kr>